

2025

11

Monthly
Magazine

통 권 264호

2025 - 11

세무회계경영저널

2025

공익법인

세무안내



월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세무회계경영저널

eAnSe.com

30분내
Q&A답글 +

즉답829-7575
010-2672-2250

Biz life partner, 온라인재경교육, e러닝, 전직원경영관리아카데미, CEO, CFO, CMO 등 경영진 휴대북, 관리자 점검표·실무자학습지

이달의 특집

■ 2025

공익법인 세무안내

(국세청)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

등록번호 영등포 라-0129-등록일 2003년 11월
11일 발행인겸편집인: 이윤선
발행처 (주)안건조세정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로84길 41(신길동) 안세빌딩 1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
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안 건 조 세 정 보

안안
세건
회조
계세
법정
인보



안세회계법인

Anse, the Best Answer

829-7557

829-7555

anse.com

..... ESG컨설팅과 인증,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설계자문, 기업가치평가

- PA 전문 ① 상장, 코스닥, 대기업의 내부회계 Private Accounting 전문 특화
- 회계감사 ② 소속회계사 125명 + 세무직원 330명 = 성실한 450명 활동
- 세무대리 ③ 대형회계법인에서 10년 이상 경력의 숙련된 전공별 회계사
- 재무자문 ④ 2023년 매출액 711억원으로 250개 법인 중 10번째 규모
- 경영컨설팅 ⑤ 서울 핵심지역과 광역시 총 21개의 현지밀착 1시간내 사무소
- 회계기장 ⑥ 모두 업무기획·계약·현장실행·품질관리 전 공정 책임수행
- 창업지원 ⑦ 獨自創安(독립, 자율, 창업, 안전) 경영이념과 적법투명회계
- 가업승계 ⑧ 고객현장근무 중심, 사전문제예방 컨설팅 파견과 재택가능

담당회계사·재경컨설턴트: 경리·재경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할
안세의 전국 사업본부의 소속 공인회계사등과 분사무소 · 지점

자매
회사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서울본사 (영등포) 829-7557 외부감사·세무대리·회계·기장·재무·ESG컨설팅·기업가치평가·IFRS 적용·변환 컨설팅·내부회계관리제도설계(Sox 서비스)·금융자문·인수 합병 M&A자문·품질관리심리실·준법감시인·재경본부운영·전문지식정보운영팀·지속가능경영센터·양도증여상속담·비영리공익팀 대표이사 박윤중 등기이사 장용석·조영우·정 훈·유환철 등 83명 등기이사 파트너 심리실 : 손세정(준법감시인 겸 상근 심리역), 홍재권이사, 염승섭회계사 보완심리

고경호·고두환·고영일·권창현·김경수·김대현·김동욱·김봉수·김영룡·김옥철·김윤정·김종창·김준영·김준일·김태준·김한솔·김현단·박규태·박병준·박윤중·박정렬·박영동·백익권·백애라·서병욱·서혜빈(수습)·송형곤·양승민·오진탁·유진우·유성식·윤훈기·이만선·이미지·이샤야·이진수·이재권·이종량·이희건·임정훈·장용석·제갈원구·조민기·조영우·조완진·진수미·최영진·표정협·한상표·허정식·홍상연·홍희빈·황창연

서초(분실)	070-7668-6865 강민우·곽영미·박지은·선지우·이승환·이현섭·이혜리·정호신	서초명달지점	070-5101-1651 김용환·김수범·강용희
가산분실	02-6011-5517 설찬수·이남재·정 현	강남지점	516-4199 윤봉진·장원택·최정화
부산북(사상)	051-322-8321 공병진·윤재운·이동계	서초방배지점	6245-7502 정 훈·김태경·라선희
부산지점	051-819-3308 김수영·박지훈·이상태	강남삼성지점	571-3700 정원용·임진호·안영호
부산중앙지점	051-714-7227 김치현·이형래·홍영표	여의도지점	6959-2378 변남진·양용석·오유준
부산센텀지점	051-938-9677 이대건·이수영·장시연	센트럴지점(용산)	2209-0710 유환철·유지운·윤현철
대전지점	042-525-5558 김형진·이상훈·정대환	영등포지점	2633-9243 차병길·방수혁·이원재
경인지점	032-815-2641 심강수·이희곤·정영훈	가산지점	2026-8838 조재형·허 근·고경환
일산지점	031-817-4189 김종운·송주호·최민욱	중기(마포)	02-312-2255 이익재·이준상·이승호
송도지점	032-715-5376 강우석·조승범·김성우		
울산지점	052-263-7006 배한성·오승혁·장효철		
특별자문역	유찬영 세무사, 홍현영 법무사, 이승환 노무사, 김재덕 세무사, 김흥기·윤경만·박희원·이우목·이미경 경영지도사		

안세회계법인의 상장 · 대기업 PA(Private accounting) 업무 상세내역

안세회계법인은 거래소상장법인 코스닥상장회사 재벌집단 대기업그룹 다국적글로벌외투법인등의 내부회계협력자문 PA(Private accounting)회계재무경영자문 아웃소싱용역의 최선봉에서,기업내부재경실무자의 애로점을 최적해결하는 경력자중심 조직임 - 빅4등에서 7년차이상의 베테랑회계사가 소속되어 능동창업적 창조활동함.(02-829-7575)

- 1.ESG컨설팅 · 인증 상장회사 등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자문, 인증업무, 환경, 사회, 투명경영전략 설계 컨설팅
- 2.가치평가 기업전체가치평가(DCF 등), 기업 1주당 주식가치평가, 전환사채의 주식 및 옵션 가치평가, 상환우선주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옵션가치평가, 사모ABL평가, 보유투자주식평가, 이항모형 스톡옵션평가, 고정자산손상평가, 지분증권평가, 영업권 등 무형자산평가, 주식손상평가(관계사, 종속회사), PBR·PER 이용한 주식가치평가, 타회계감사 제출용 매도가능증권평가, 투자기업의 분기별 공정가치평가, 해외자회사 주식평가, 타회사 인수를 위한 기업가치평가, 무담보채권평가,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평가, 특수관계인간 주식양수도평가, RCPS용 비상장주식평가, 비상장사의 영업권 평가, 무형자산손상검토, 사회적 가치서비스 창출자문(ESG)
- 3.일반재무제표 매년도 재무제표 작성·지원용역, 현금흐름표와 주석작성, 내부경리실무자의 일손부족분 결산보조,원가회계와 제조원가계산.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명세서작성,원가관리와 제품별 공정별 원가계산과정의 엑셀정리집계,제조원가배부용 감가상각비계산과 생산원가반영후 최종결산재무제표작성, 반기재무제표작성, 기업인수합병영업권대가의 각 사업부 배부용역, 재무결산지원, 재무제표작성과정의 신속·고도화, 건설·조선 공사 등 진행을 검토, 분기·반기·연차 재무제표작성지원협력, 국가중앙행정 각부·지자체 등 결산지원업무, 공기업·공기관 결산지원용역
- 4.내부회계분야 내부회계시스템 구축·설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구축 및 운영평가지원, 재무관리실태감사와 내부회계지원
- 5.K-IFRS 관련 국제회계자문 연간일정(평상시 회계쟁점자문, 질문의견서 작성, 분기재무·반기검토 작성지원, 결산마감과 재무제표·현금흐름표·주석 작성, 연결분개재무제표, 외감현장입회대응, 해외모기업 합산재무지원)
- 6.외감 아닌 기타 인증업무 합의된 절차에 의한 실사업무, 사업비정산 검토감사, 임의감사, 조성원가추정계산, 연구비 위탁정산
- 7.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작성·지원·자문용역, 국내외 자회사 등의 내부거래이익 제거, 연결재무제표 기초이월잔액 검증
- 8.사업계획서등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타당성보고서, 사업계획 미래현금흐름검토, 대규모 사업단지 개발지역·오피스텔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스타트업 지원
- 9.M&A실사조사등 인수대상회사 실사, 내부 임직원 부정적발조사, 자산부채자본실사, 자산양수도거래의 외부평가
- 10.화의·법정관리등 각급 법원 회생조사위원, 회생신청 전반 컨설팅, 관리인 조사보고서의 재검토
- 11.외국 · 해외비지니스 감사보고서 영문번역, 해외투자와 자원개발자금 심사와 실사업무, USGAAP기준, 영문감사보고서
- 12.기타특수업무 기업의 금융감독원 특별심사 감리대응자문, 위탁수수료 예상가격 산정, 컨설팅사의 공기관 제출 인증서류 검토, 상장코스닥사 사외이사취임, 세무고문, 내부감사(상근, 비상근), 회계 · 세무 · 경영분야 겸직가능, 상장사등 내부 감사위원회 구성원 역할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

+ 교육·훈련강의저널
+ CEO·CFO·기업법무저널

www.eAnSe.com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은
고객회사와 기업재정실무자의
“명료한 세무판단”,
“투명한 회계처리”,
“효율적 경영활동”
에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회계법인이 연합하여
공동제작하는
회계세무재경 전문가의
정보자료전략컨설팅지
입니다.

11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10(월)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20(목)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이달의 특집 공익법인 세무안내 (국세청)

I. 공익법인이란	
1. 공익법인의 정의	2
2.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11
II. 공익법인과 세금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16
2.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16
3. 토지 등 양도소득과 관련한 내용	41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지원	44
5. 출연자의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과세	47
III.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1.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48
2.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49
3.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52
4.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54
5.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58
6.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의무	61
7.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67
8.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 적용의무	70
9.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제출 의무	71
10.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72
IV.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1.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73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82
3.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85
4.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	92
5. 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사용	108
6.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	113
7.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118
8. 자기내부거래 시 지켜야 할 일	118
9.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 금지	121
10. 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일	122
V.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과 소득세법상 공익단체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과 비교	123
2.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	124
3. 소득세법상 공익단체	131
4.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 의무 등	138
5.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139
6. 주무관청과 국세청간 협조	142

✓부가세영세율과표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액 평가의 기준·재정 환
율 (10월) 144

2025 공익법인 세무안내

- 국세청 -

1. 공익법인이란

1. 공익법인의 정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증세법에서는 공익성을 고려하여 아래 1호부터 7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자를 ‘공익법인등’으로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 이에 해당하며, 그밖에 종교단체·공익단체(소득령 §80①(5)) 등 법인이 아닌 단체 등도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19.1.1.이후부터 적용)
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구 상증령 §12(5)~(8), (11) 및 구 상증규칙 §3의 사업은 '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공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됨(단, '18. 12. 31.에 종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0. 12. 31.까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제6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령§39①(바)에 따른 공익법인 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상증령§12, 법인령§39①(바))

◎ 공익법인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본래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출연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세법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여,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그 밖에도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 공익법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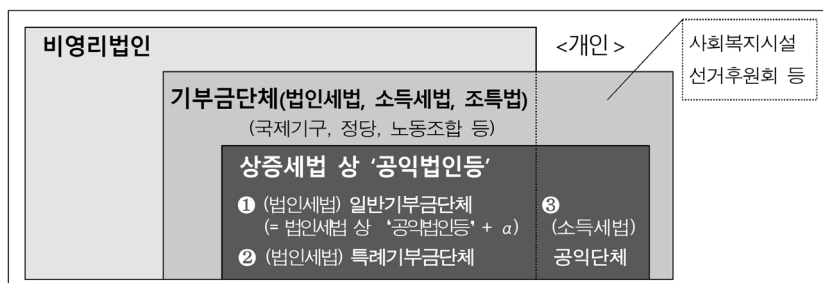
종교단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은 별도의 절차 없이 공익법인으로 인정됩니다.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외국법인,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이 법령 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①국세청에 지정추천 신청을 하고, ②국세청장의 지정추천을 거쳐 ③기재부 장관의 지정고시를 받은 뒤 공익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기부금단체', '법인세법 상 공익법인등'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부금단체) 기부금단체란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단체를 일컫습니다. 기부금단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고, 기부자는 이를 소득공제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상 '공익법인등') 법령 개정으로 '21년부터 舊 '지정기부금단체등'(법인령 §39①(1))이 '공익법인등'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즉, 법인세법 상 '공익법인등'은 법인세법 상 기부금단체이자 동시에 상증세법 상 '공익법인등'(상증령 §12(6))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이라 함은 상증세법의 개념을 일컫습니다.

- 법인세법·소득세법·조특법 상 기부금단체 → 기부금을 수령하여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
- 상증세법 상 공익법인 →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비영리법인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임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함(재삼 46014-1914, '95.7.25.)

■ 종교활동을 위한 인적·물적시설이 있어야 함

등록요건이 미비하여 소속교단에 등록되지 못한 상태이고 종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조직 및 물적시설이 없는 경우 공익법인이 아님(감심2009-197, '09.10.8.)

■ 종교단체는 법인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고유목적사업으로 공익법인 여부 판단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재산-274, '11.6.7.)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 시행일 이전 설립의 경우

「사립학교법」 시행일('63. 6. 26.) 이전에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어 운용되는 경우도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 외국인학교의 경우

'01. 4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의해 외국인학교 관련 규정이 신설(초·중등 교육법 §60의 2)됨에 따라 '01. 4월 이후 외국인학교도 공익법인에 해당됨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다음의 법률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말합니다.

- | |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아동복지법 | · 노인복지법 |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 · 입양특례법 | · 장애인복지법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한부모가족지원법 | |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 영유아보육법 | |
|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 |

· 다운화가족지원법 · 장애인연금법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청소년복지 지원법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법인세법 §24②(1)에 해당하는 기부금(특례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24②(1)에 따른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

-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
-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라.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 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4)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 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 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 하는 학교
 -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 마.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6)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1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 14) 1)부터 13)까지의 병원이 설립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

바.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6. 법인령 §39①(1)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 및 소득령 §80①(5)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

■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비영리내국법인, 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법인령 §39①(1))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14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은 제외)
-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소속단체를 포함)
- 바. 국세청(관할세무서 포함)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비영리 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 구 법인칙 별표6의2의 비영리법인과 '18. 2. 13. 이전에 주무관청에 인·허가받은 학술연구·장학·문화예술·환경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20. 12. 31.까지 지정기부금으로 봄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법인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이 공익법인으로서의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舊「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2018.2.13., 28640호)에 따라 2021.1.1.부터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20.12.31. 이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및 제4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출연 받은 재산을 2021.1.1.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를 계속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해당 공익법인이 2021.1.1.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출연재산을 전부 사용함으로써 더 이상 잔여 출연재산이 없게 된다면 잔여출연재산이 없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속분까지는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그 이후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 의무는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또한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2020.12.31. 이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함으로써 2020.12.31. 현재 해당 공익법인에 더 이상 잔여 출연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202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는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공익중소법인지원팀-849, '22.09.07.)

■ 소득세법상 공익단체(소득령 §80①(5))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일정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7.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법인령 §39①(2)(다)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 목적사업은 제외)

■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공익목적 기부금의 범위('24. 12. 31. 기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비용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 및 설비, 기술,인력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방송법」에 따라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범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군·구 회원종목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에게 지출하거나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기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에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숙련기술장려법」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숙련기술장려적립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각각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단법인 한국중화총상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상대회 개최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전체 사업량의 40%이상을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관에 규정한 연합회로 한정한다)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사업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농수식품씨이오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에 직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비, 장애경제인 창업지원사업비, 장애경제인협회 회관·연수원 건립비, 장애경제인대회 개최비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대한민국헌정회에 정책연구비 및 헌정기념에 관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단체에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같은 법 제67조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13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공유·분석센터에 금융 분야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 취약점의 분석·평가 등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에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회공헌기금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회공헌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노사상생협력 증진에 관한 교육·상담 사업, 그 밖에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해외난민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마목의 병원에 자선의료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보험사업을 위해 기업이 출연하는 기부금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사업을 위해 기업이 출연하는 기부금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사업자외의 개인이 출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업을 위해 기업이 출연하는 기부금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는 상생소비 지원금 사업의 통합서버 구축·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에 「사랑의 줌도리운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공익목적기부금의 범위’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행정규칙 → 고시·공고·지침 ‘공익법인’ 키워드 검색 → ‘202X년 X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확인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 기재부 지정 공익법인이 해당 기부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해당 기부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부금 지정, 고시 시점부터 상증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공익중소법인지원팀-862, '22.9.15.)
- ❖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상증령 §12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공익법인이 아님
 공익사업 종류는 예시규정이 아니라 열거규정이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과세가액산입함(대법96누 7700, '96.12.10.)
 - 개인이 설립한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개인이 설립한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법령해석재산-21431, '15.4.10.)
 - 공원묘원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재산-141, '10.3.9.)
 -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음(서면4팀-3510, '06.10.25.)
 - 개인이 운용하는 아동복지시설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용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법인세과1285, '20.11.19.)

|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는 사례 |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법인 중 종중, 동창회, 영업자 단체 등
- 국가기관, 정당, 조합법인
- 영리기업의 사업자단체(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불구함)
- 인가받지 아니한 유치원이 수행하는 사업
- 공원묘원, 납골당

... 주요 상담사례

Q. 세법상 공익법인 등이란?

A.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소득세법상 단체 등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상증령 §12).

Q. 세법상 공익법인 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다음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합니다.(상증령 §12)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의한 공익법인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
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

Q.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공익법인인지 여부

A.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법인세과-4136, 2020.11.19.)

2.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구분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므로 크게는 민법의 적용을 받으며,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서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과 구분

재단·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그 법인이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하도록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속하였으나, '19. 1. 1. 이후부터는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단, '18. 12. 31. 현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법인은 '20. 12. 31.까지 공익법인의 지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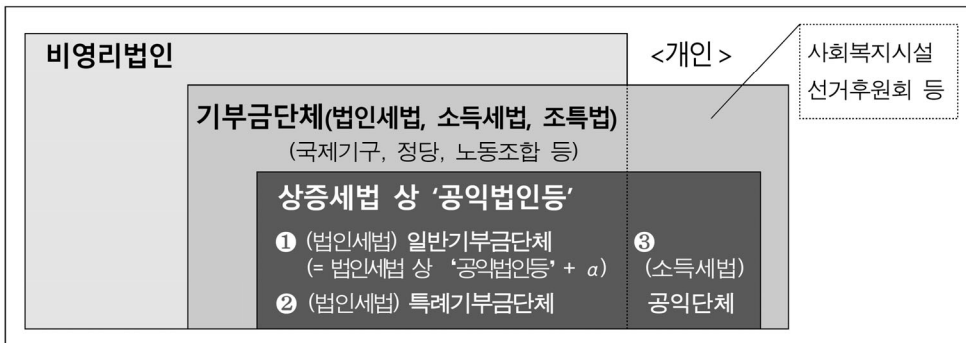
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과 구분

「법인세법」 제2조제2호의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법인세법」은 법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의 목적과 적용방법이 다릅니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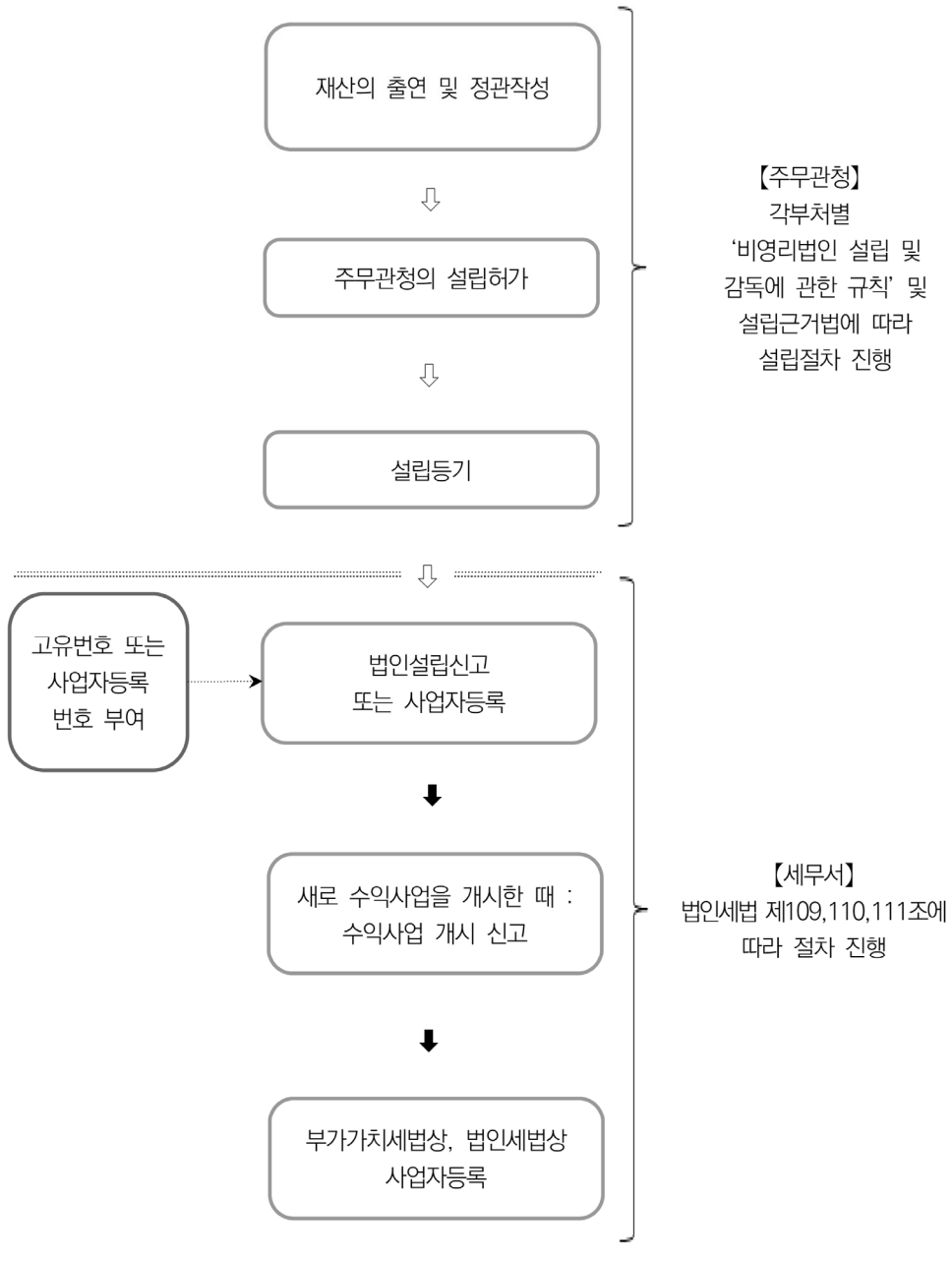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관계



공익법인의 설립근거법

공 익 유 형	설 립 근 거 법
종교	민법, 기타 특별법 등
학술, 장학, 자선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법
교육	사립학교법 등
의료	의료법
문화·예술	문화예술진흥법, 민법
기타	민법, 기타 특별법 등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 및 법인설립신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

주무관청	소관사무
기획재정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
교육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 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외교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
통일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
법무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
국방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
행정안전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
산업통상자원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
보건복지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보육을 포함)·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
환경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에 관한 사무
국토교통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

주무관청의 법인업무 위임 또는 위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하급행정기관의 장 등에 위임

주무관청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우정사업관련 비영리법인) 국립전파연구원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 국립과천과학관장(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강원도 소재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 국립중앙과학관장(그외 소재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
교육부	교육감
외교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행정안전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소방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국가유산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농촌진흥청	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도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환경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여성가족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국토교통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해양수산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수산 및 해양 레저스포츠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단, 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가보훈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

II. 공익법인과 세금

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이를 탈세나 부의 편법 상속 등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법상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증여세나 가산세 등을 부과함으로써 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목적사업에 전념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법 외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각 특별법에서 정관이나 임원의 임면, 이사회 운영, 주무관청의 감독 등에 관한 특별규정을 둬으로써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공익목적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여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도록 한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공익법인 관련 세제혜택

- (상속세 및 증여세) 공익법인에게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음(상증법§16①, 상증법§48①)
- (소득세) 공익법인에게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기부자의) 연말정산시 기부금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소법§59의4④)
- (법인세)
 - (법인인 기부자가) 공익법인 포함 특례·일반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법법§24②,③)
 -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가능(법법§29①)
- (부가가치세) 종교·자선·학술·구조 그 밖의 공익목적으로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해 면세(부법§26①(18), 부령§45)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가. 출연재산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출연행위에 따라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합니다.

즉, 기부금 등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얻은 재산이 출연재산이 되는 것이며, 대가를 수반하여 제공받은 재산은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현금을 말하되, 부동산 및 주식 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48② 본문단서, 상증령 §38①).

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상증법 §16①④)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후 해당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1) 피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의 특수관계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2) 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하되, 상속인이 출연받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야 합니다(상증령 §13②).

☞ 상속인에는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

☞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등에서 물러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상속인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 상태로 전환한 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된 재산가액은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증통칙 16-13…3 ①).

☞ 영 제1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이사에는 이사회 의결권을 갖지 아니하는 감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상증통칙 16-13…3 ②)

3) 출연 시한

재산을 출연할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결과적으로 출연하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16①).

다만, 출연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상속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이유로 소유권이전 및 설립허가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합니다(상증법 §16①본문 괄호).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동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한다. (상증통칙 16-13…2 ①)

4) 상속재산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주식이 그 내국법인의 발

행주식총수 등의 5%(또는 10%, 20%)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총 발행주식수의 5%(또는 10%,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상증법 §16②).

다.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상증법 §48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출연받은 재산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일 때, 일정한 경우 나. 4)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또한,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출연재산의 경우, 출연재산 등의 사용 및 각종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후 관리 규정은 세제혜택이 공익사업에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출연재산 해당 여부

■ 종교헌금의 출연재산 해당 여부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8, '16.5.26)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국외주식인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출연받은 재산에는 국외주식을 포함함(상속증여세과-552, '13.9.16.)

■ 채무면제액도 출연재산에 포함

출연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재산-577, '11.11.30.)

■ 비영리사단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의 출연재산 해당여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부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서면4팀-1274, '08.5.26.)

cf) 일반회비 외에 찬조금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납부에 따른 혜택이 없거나, 납부가 강제되지도 않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명목상 회비일 뿐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출연재산에 포함

■ 개인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출연재산 해당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개인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4팀-2189, '05.11.15. 외 다수)

- 현금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포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에는 현금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하는 것임(서일46014-11530, '03.10.28.)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도 출연재산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서일46014-10529, '02.4.23.)
- ❖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 여부
 -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출연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상속증여세과-612, '17.6.8.)
 - 종교단체가 교단(상호)을 변경할 경우 교회건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종교단체가 종교단체의 명칭만 변경하여 부동산소유자를 새로운 종교단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출연이 아님(상속증여세과-529, '16.5.18.)
 - 출연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공익법인등이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출연자는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상속증여세과-122, '14.5.1.)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출연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등에게 출연을 이행한 경우 그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상속증여세과-609, '13.11.18.)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매각한 대금을 출연시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재산-431, '12.11.30.)
 - 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등으로 하여금 건물의 부지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면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학교법인이 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및 그 친족으로 하여금 건물의 부지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면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원고를 위하여 건물을 물상담보로 제공한 것은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대법원2009두17575, '11.10.13.)
 -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기준으로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임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재산-299, '11.6.22.)
 - 의료기기 취득목적으로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자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시 과세 여부
의료기기 등의 취득목적으로 기부받은 현금으로 임대용건물을 매입하여 동 사업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으로

의료기기 등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되는 것임. 다만,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그 운용소득의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재산-932, '09.5.14.)

■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2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되는 경우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조직·직원 및 재산 중 일부를 주 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 승계시키는 등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서면4팀-1675, '07.5.21. 외 다수)

■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출연한 것에 대해 상속세 부과한 사례

실제 출연하지 않은 채 출연한 것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가 되었고,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에야 출연이 이루어졌으며, 쟁점출연금미 민법상 자필증서, 녹음 등 적법한 방식을 갖춘 유언에 의하여 출연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출연금의 출연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이나 유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상속인들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국심2005서3786, '06.4.7.)

■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명의 재산을 출연했음에도 과세가액 불산입한 사례

상속인 명의의 현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나중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정산함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모두 끝났고, 공익법인에 출연한 이후 당해 금액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국심2005중1885, '05.12.30.)

■ 유언이 적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 적법한 방식을 갖춘 유언을 따르지 않은 장학재단의 설립을 위한 부동산의 출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됨(대법2005두3271, '05.6.23.)

■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기 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가능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규법인이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설립 당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공익중소법인지원팀-373, '22.04.14.).

■ 비영리 외국법인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 가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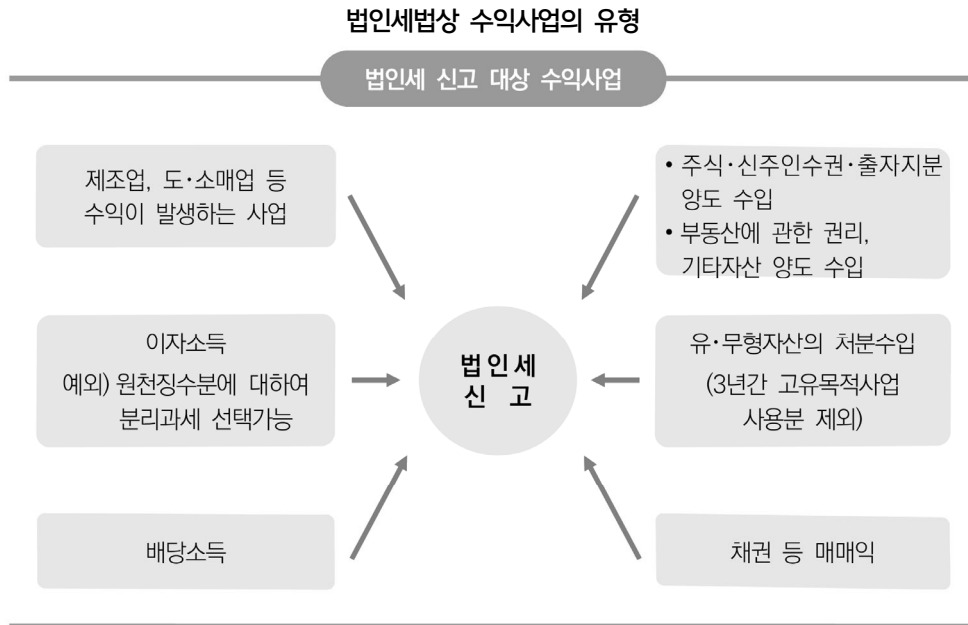
비영리 외국법인이 A재단으로부터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해당 비영리 외국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임(서면-2023-법규법인-3576)

■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서면-2023-상속증여-4279)

2.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인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①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더불어 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청산소득과 미환류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가.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합니다(법법 §4③).

- ①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함(법인령 §3 ①)

● 제외대상

-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 포함) 외의 농업
-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

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정 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13. 2. 15.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국제학교에 대하여는 '19. 2. 12.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타. 「임양특례법」에 따른 임양기관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하.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21. 1. 1. 이후 발생하는 수입 분부터 적용)

- 연금이나 공제업 중 국민연금사업 및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함)

- 사회보장보험 중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소속단체* 포함)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26 ① 18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소속단체는 '1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예금보험제도 등을 운영하는 사업 등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 노후연금 지급사업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소액신용대출사업

-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함)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국가원의 승단·승급·승품 심사사업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 한국장학재단이 「법인세법」 제2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을 통해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사업 ('21. 1. 1. 이후 발생하는 수입 분부터 적용)

- ②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 ③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 ④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 ⑤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 수익사업에 속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자산 처분일 현재,
 - (i)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처분한 경우 : 전입 이후 발생한 처분수입* 과세 제외
 - * 비과세 처분수입 = 양도가액 - 고유목적사업 최초 전입시 시가
 - ☞ '18. 2. 13. 이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 (ii) 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 자산의 보유기간 대비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처분수입 과세 제외
- $$\text{비과세 처분수입 (양도가액 - 고유목적사업 최초 전입시 시가)} \times \frac{\text{해당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일수}}{\text{해당 자산을 보유한 일수}}$$
- ☞ 개정 법인령 시행 이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으로 임대사업을 하여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 해당 부동산 자체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됨(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특례 적용가능)
 - ☞ 상증법상으로는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님(∵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으로 운용시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봄)
 - 당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 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봄
- ⑥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 ⑦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 제외)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이란 같은 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서비스업을 말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인 전산정보교육원 등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서비스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3… 6).

-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함(법인세과-1879, '18.7.18.)
-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받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재화 또는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원받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과-1190, '18.5.17.)
-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받는 사용료
비영리내국법인이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법인세과-1958, '16.7.20.)
- 계약 등에 의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
연구 및 개발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법인-3364, '16.5.11.)
- 공제조합이 분담금으로 폐기물 회수·인계·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사업
공제조합이 분담금으로 폐기물 회수·인계·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법령해석법인-2495, '16.4.6.)
- 종전 부동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종전 부동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함(법규법인2014-434, '14.9.29.)
-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탁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탁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법규법인2014-107, '14.3.31.)
-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무상교육을 실시하거나 실비상당액을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인 교육·지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연수원을 조성하고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무상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기관으로부터 수탁교육비 또는 교육생 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을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규법인 2014-5, '14.3.27.)
- 손해배상책임 공제료 등의 관리·운용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협회가 회원사로부터 손해배상책임 공제료를 받아 보험회사에 납부하고 운영수수료를 징취하는 경우 운영 수수료 및 공제료의 관리·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432, '11.6.30.)
- 회비의 실질이 용역제공 등의 대가인 경우 과세대상임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회비의 실질이 용역제공 등과 관련한 대가인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임(법인-1198, '10.12.27.)
-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자산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더라도 양도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법인-804, '10.8.27.)

- 관리비 외 별도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아파트형공장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서면2팀-1068, '08.6.2.)
- 고정자산 처분손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소득금액의 50%까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계상 가능함(재법인 46012-151, '03.9.19.)
- 교회가 묘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임
교회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묘지 운영이 교회의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서면2팀-820, '05.6.15. 국심2003서614, '03.4.22.)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규정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서이 46012-10302, '01.10.5.)
- 회보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 등을 발간함에 있어서 동 회보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생기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그 회보 발간비는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하고 광고수입을 초과하는 회보 발간비는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라 함은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 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법인 46012-828, '99.3.6.)
-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18.7.2.)
 -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해당 사업의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법령 해석법인-5039, '17.5.29.)
 -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4471, '16.8.24.)
 -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 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3855, '16.8.11.)

- 고정자산을 처분한 금액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해 법인세가 면제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는 것임(법령해석법인-3523, '16.7.11.)
- 지역사회활센터 영위사업의 비수익사업 해당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사회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법인세과-744, '21.4.2)
- 회원들로부터 받는 회비의 수익사업 소득 여부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경조사 등에 사용하고 탈퇴시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회비를 반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안됨(서이46012-10400, '02.3.6.)
-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며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서 청소년육성사업을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육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 해당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임(법규법인2012-168, '12.5.30.)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법규과-777, '14.7.22.)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해 국가, 지자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의 소득이 아님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소득이 아니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주)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함(재법인-635, '08.10.17.)

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경리(법법 §113, 법인칙 §75·§76)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 기록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합니다.

1) 자산·부채의 구분경리

자산 및 부채는 구분경리의 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의 자산 및 부채라 함은 수익사업의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산과 수익을 발생시키는 원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채를 말합니다.

그러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손익의 구분경리

① 개별손익금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별로 그 발생원천이 분명한 개별손익금은 그 원천별로 귀속시켜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 기장합니다.

② 공통손익금(법인칙 §76⑥)

수익 또는 비용을 구분 경리함에 있어 그 구분이 불분명한 공통손익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구분 계산합니다.

☐ 공통익금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

☐ 공통손금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으로 안분계산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 :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수개의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함(법통칙 113-156...5)

☞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 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포함)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함. 이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비영리 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함(법통칙 113-156...1)

3) 수익사업의 자본금(법인칙 §76②)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있지는 않지만, 세무조정 등에 필요하므로 다음 산식에 따라 자본금을 산정합니다.

$$\text{수익사업의 자본금} = \text{수익사업 자산합계액} - \text{수익사업 부채(충당금 포함)합계액}$$

4)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간의 자본원입(법인칙 §76③④)

①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경우 그 자

산가액(시가)은 자본의 원입으로 하고,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합니다(법통칙 113-156...2).

② 수익사업용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 금액(잉여금을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합니다.

□ 비영리법인의 잉여금의 범위(법통칙 113-156...3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때에는 당해 자산가액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과 순차적으로 상계처리 하여야 한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법법 §29에 따라 손금산입된 금액(법법 §29③ 후단의 금액을 포함한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3. 법인세 과세 후의 수익사업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
 4. 자본의 원입액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수익사업용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 가액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금전 외의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 그 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자산의 평가이익(장부가액과 시가와와의 차액)은 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익금에 해당함(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4, '12.5.16.)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의 급여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임(법인-553, '09.5.12.)
-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함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3조에 의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법인-526, '09.5.4.)
-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전출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전출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3 제2항에 따라 상계처리하는 것임(서면2팀-1376, '06.7.20.)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법 §29)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재원 확보를 통한 공익목적사업 지원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 ① 고유목적사업 또는 ②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 법법§24③)에 지출할 수 있도록, 일정한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합니다.
 - 손금산입 한도
 -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 등×100%

-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50%(또는 80%)
-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100% 등)
- 고유목적사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령 §3①의 수익 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법인령 §56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법 §24③(1)에 따른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법법 §29①).

비영리법인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일반기부금(법법§24③(1))의 회계처리

구 분		고유목적사업 준 비 금	고유목적사업비 및 일반기부금(법법§24 ③(1))에 따른 지출액의 회계처리
1. 법인격이 있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법법 §29①)		설정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 금의
2. 법인으로 사 용 액 으 로 처 리 보 는 단 체	(1) 법인령 §39①(1)의 단체, 법령상 설치된 기금 (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3) 기타단체	설정대상 제외	일반기부금(법법§24③(1)) 등으로 처리

* '18. 2. 1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일반기부금(법법§24③(1))으로 처리시 손금산입 한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인령 §56① 각 호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일반기부금(법법§24③(1)) (구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법인령 §39②)
- 손금산입 한도액 (법법 §24③)
 - = {수익사업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 특례기부금(법법 §24②(1), 구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이월결손금 ×10%)

● 설정 제외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과 청산

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통칙 29-56...1)

- 과세표준 신고특례 적용 받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법법 §62)
-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 제외)을 적용받는 비영리법인(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는 제외) (법인령 §56⑧)
-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특법 §104의7②)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소득(법법 §29①)

가) 법인세법상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

①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100%)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 ㉠ 소득세법 §16①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 다음의 금액은 이자소득금액에 포함됨(법인령 §56②)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을 포함함)에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
- 법인령 §3①(5)나에 따른 연금업 및 공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보증료 수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 '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소득세법 §17①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증법 §16·§48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 금액은 제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회원 및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②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에 5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다만,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의 80% 범위 내에서 설정가능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분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

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법인세법 당해수익사업에서 발행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법인 46012-3644, '95.9.25.)

□ 기타의 수익사업 소득금액(법인령 §56③)

=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법 §24②(1)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해당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은 제외함*)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비영업대금 이익 제외)

(-) 배당소득금액

(-) 특별법인의 용자금 이자금액

(-) 이월결손금(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로 적용하는 법인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특례기부금(법법 §24②(1))

* '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설정대상금액(조특법 §74)

① 다음의 법인에 대하여는 '25. 12. 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전액(100%)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 산입

㉠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

㉡ 사회복지법인

㉢ 국립대학교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 법인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설립한 의료기술 협력단

㉤ 해당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지방문화원, 예술의 전당,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그 밖의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단체로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조특령 §70)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조직위원회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법법§24③(1)에 따른 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 ⊗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법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25.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그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
- * 인구가 30만명 이하이고 국립대학병원 또는 사립대학교 운영병원이 없는 지역(조특령§70)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법법 §29⑤(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해당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해야한다.

* 고유목적사업등: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법인령§56⑤)이나 일반기부금(법법§24③(1))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세무조정(법법 §29①,②)

- 결산조정이 원칙이지만,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은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 (신고조정) ①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②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③해당 금액을 당해연도 이익처분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봄

손금산입한 준비금에 상당한 금액을 적립하지 않거나 해당 준비금의 익금산입 시 익금산입액보다 적립금을 초과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미달적립금 또는 초과 처분액을 해당 준비금을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불산입함

- 다만, 해당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처분가능 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적립하여야 함(법인통칙 61-98...1)

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전입(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시)

결 산 조 정	신 고 조 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비용) 1,000	미처분이익잉여금 1,0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 1,0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
[세무조정] 한도액 계산하여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유보)	(준비금 적립, 잉여금 계정) [세무조정] 한도액까지 손금산입(△유보)

● 임의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은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서이46012-11844, '03.10.23.)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의 처리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규정의 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다만, 동 금액을 환입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통칙 29-56...3).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결 산 조 정	신 고 조 정
【수익사업】 -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 차감) 800 / 현 금 800 ⇒ [세무조정] 없음	【수익사업】 -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잉여금계정에서 차감) 800 / 현 금 800 ⇒ [세무조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 800 익금산입(유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목적사업 전출 800 손금산입(기타)
【비수익사업】 -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입 현 금 8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 800 - 비수익사업에서 사용 목적사업비 800 / 현 금 8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 차감) 8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수익) 800	【비수익사업】 -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입 현 금 8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잉여금) 800 - 비수익사업에서 사용 목적사업비 800 / 현 금 800

● 준비금의 사용순서 등(법법 §29③)

- ①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봄
- ②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 고유목적사업 지출(사용) 금액의 사용범위(법인령 §56⑥)

- 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법인령 §31②에 따른 자본적지출 포함)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

□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과다 인건비(법인령 §56⑩)

→ 다음의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 중 8천만원 초과분

* 해당 사업연도 근로기간1년 미만 : 12개월로 환산 [총급여액을 근로기간 월수(1월미만 1월)로 나눈 금액 X 12]

① 법법 §29①(2)에 따라

㉠ 해당 연도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과,

㉡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5개 사업연도 동안 수익사업 소득 합계액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

② 조특법 §74①(2)1) 및 (8)2)에 따라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 해당 연도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과,

㉡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5개 사업연도 동안 수익사업 소득 합계액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

□ 과다 인건비 제한 예외(법인령 §56⑩단서)

→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인건비 지급규정 및 주무관청의 승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② 기금 또는 준비금에의 적립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함

③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자산의 취득 또는 연구개발사업에 지출하는 금액

□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법규칙§29의2①)

-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 산부인과 병원·의원 또는 조사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23.3.20. 이후 적용)

□ 의료 해외진출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출하는 금액(법규칙§29의2②)

-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임차하거나 인테리어 하는 경우

-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를 임차하는 경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법규칙§29의2③)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체연구개발사업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사업('14년 지출분부터 적용)

☞ 이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손금으로 계산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 하여야 함(법인령§56⑩)

* 의료발전회계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함(법규칙§29의2④)

※ 의료발전회계의 처리방법(법인통칙 29-56...6)

구분	병원회계(수익사업)	의료발전회계
100 전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1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100 구입	자 산 100 / 현 금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의료발전준비금 100	자산(별도관리) 100 / 의료발전준비금 100

구분	병원회계(수익사업)	의료발전회계
20 감가상각	감가상각비 20 / 감가상각누계액 20 의료발전준비금 20 / 의료발전준비금환입(익금) 20	의료발전준비금 20 / 자 산 20
50 처분	현 금 50 / 자 산 100 감가상각누계액 20 / 의료발전준비금환입(익금) 80 처분손실 30 의료발전준비금 80	의료발전준비금 80 / 자 산 80

④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에게 무상대여하는 금액

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관련법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 단, ① 또는 ③에 해당하는 비용은 유·무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료법인)에 한정)에 3년 이상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 '18. 2. 13.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목적사업에서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경우)

결 산 조 정	신 고 조 정
【수익사업】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 2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수익) 200 ⇒ [세무조정] 없음	【수익사업】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잉여금) 200 / 미처분이익잉여금 200 ⇒ [세무조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200 익금산입(유보)

※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있는 경우 5년 이내 익금산입 가능(법법 §29⑤)

● 익금산입 사유(법법 §29⑤)

- ① 해산한 경우(다만, 법법§29④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 제외)
- ②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 ④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함)
- 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이자상당액이 추정되는 경우(법법 §29⑦)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법인이 5년 내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년이 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환입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함(위 익금산입 사유 중 ④와 ⑤의 경우에만 이자상당액 추정)

●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법법 §29⑦관련 법인령 §56⑦)

$$\text{이자상당액} = \text{제1호의 금액} \times \text{제2호의 율}$$

- 제1호 :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제2호 :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2의 율*
 - * 2022.2.15. 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율은 10만분의 25로 하고 2022.2.15.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율은 1일 10만분의 22로함. (법인령 제32418호 부칙 §8, 2022.2.15.)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손금산입 여부
 - 비수익사업회계에 사용이 금지된 소득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소득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손금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교육부의 수익사업 재산처분 허가조건에 따라 비수익사업회계에 사용이 금지된 소득은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법인-2018-0042, '19.01.11.)
 - 산학협력단 부설단체인 창업보육센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여부
산학협력단의 부설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해당 산학협력단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창업보육센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법규법인2012-122, '12.5.11.)

- 퇴직연금적립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이 아님
비영리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운용사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퇴직연금적립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이자·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법인-983, '10.10.2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불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과-1317, '09.11.27.)
- 과소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경정청구 가능 여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소 계상한 준비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서면2팀-477, '05.3.31.)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의 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
법인으로 등기된 노동조합 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법인 46012-2063, '00.10.7.)
- 고유목적사업지출 해당 여부
 -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 기부금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법규법인2013-82, '13.3.27.)
 - 의료법인이 임차보증금으로 지출한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을 적용함에 있어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을 의료발전 회계로 구분경리하고 병원건물 및 부속토지, 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병원건물 부속토지를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임(서면-2024-법인-1681, '24.9.9.)
 - 비영리법인간 일부 자산 및 부채 출연시 세무처리
의료법인이 운영하던 2개의 병원 중 1개 병원의 자산·부채를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법의 부속병원으로 포괄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출연하는 병원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의료발전준비금 잔액은 학교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법인-735, '10.8.3.)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예금으로 예치한 것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이 아님
사립학교법인이 고정자산양도차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적립 후 해당 금액을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으로 예치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없음(법규법인2010-164, '10.6.9.)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정기부금을 지출 시 시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먼저 계상한 사업 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순차로 상계해야 하며, 이 경우 지정기부금 시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법인-1033, '09.9.21.)

■ 사립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시점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당해 전출의 행위가 명목뿐인 경우로서 당해 재산을 계속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동 자산이 전출 후에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경우에는 그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법인 46012-4050, '99.11.22., 서면2팀-341, '06.2.14., 서면2팀-1370, '06.7.20.

■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 준비금 사용에 해당 안 됨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용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을 법법 §29 ①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한 후 이를 다시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수익용)으로 편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재법인 46012-81, '03.5.12., 서면2팀-1347, '06.7.14.)

■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 그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법인46012-2758, '98.9.25., 서이46012-10111, '03.1.16.).

■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122, '07.1.16.)

■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서 이46012-10969, '02.5.7.)

■ 학교법인이 교비회계에 전입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 사업회계(교비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에 따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처리 하는 것임. 다만, 학교법인이 교비회계 전입한 해당 금액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서면-2024-법인-1661, '24.8.3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산입 여부 등

■ 사업 포괄양도시 승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산입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 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법인세과-406, '13.7.3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시 익금산입 여부 및 이자상당액 가산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외부회계감사대상인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당해 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하여 환입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9-56...5의 규정에 의하여 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법인46012-327, '02.6.7.).

라.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1)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 특례

비영리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법법 §62①, 법인령 §99①).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납부와 원천징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법인령 §99②).

■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후 누락된 타소득 무신고가산세 여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이자소득만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과세표준 신고기간이 경과된 후에 누락된 수익사업 부분의 과세표준을 추가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법령해석과-3544, '15.12.29.)

■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기한후 신고 가능 여부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 이자소득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과세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과세절차가 종결된 것이므로, 기한후 신고로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원천납부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음(조심2011부88, '11.4.11.)

▪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분리과세 선택방법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을 매사업연도마다 선택적용 가능하며,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서이46012-10574, '02.3.21.)

2)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 특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간이신고서식(별지 제56호 서식 등)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기납부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류(법인칙 §82②)

- 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칙 별지 제56호 서식)
-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법인칙 별지 제27호 서식)(갑)(을)
- ③ 원천납부세액명세서(법인칙 별지 제10호 서식(갑)(을)) 내지
농어촌특별세과세 대상감면 세액 합계표(법인칙 별지 제13호 서식)

마. 수익사업 개시 신고

비영리법인이 새로 수익사업(법법 §4 ③ 1호 및 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법인칙 별지 제76호의4)와 함께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 등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법 §110).

☐ 과세소득의 범위(법법 §4③)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및 소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그밖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고유목적사업비 지출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상계(법법 §29③)

- ①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
- ②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사업연도의 고유

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3. 토지 등 양도소득과 관련한 내용

□ (요약)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 법 제 43(1)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법 제 60①)하고,
 - 지정지역 등의 주택·비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법 제 55의2)
- 법 제 43(1)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선택적용 가능)
 - ①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 제 62의2)
 -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고
 -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 제출(법령 제 99의2⑥)
 - 지정지역 등의 주택·비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법 제 55의2)
 - ☞ 다만, 소법 제 104 ④에 따른 가중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② ①로 신고·납부한 경우라도 법인세법 제 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 가능
 - ☞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법인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법령 제 99의2⑤)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과세제외

또한, 비사업용 토지 등은 이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법 제 55의2).

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1)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begin{aligned} \text{각 사업연도소득} &= \text{익금} - \text{손금} \\ &= \text{양도금액} - \text{장부가액 등} \end{aligned}$$

- ① 양도금액이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익금을 말하며,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세무상 감가상각비와 평가차액 등을 가감한 양도당시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합니다.
 - 장부가액은 취득가액 또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액에서 감가상각비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②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 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모든 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

고하여야 합니다(법법 §60).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09.3.16.부터 '1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 및 '09. 3. 16. 부터 '12. 12. 31. 까지 기간 중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text{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text{양도금액} - \text{장부가액 등}) \times \text{세율}$$

● 적용세율(법법 §55의2①)

-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

과세대상 자산	세 율	
	'14.1.1.~'20.12.31. 양도자산	'21.1.1.~ 양도자산
주택(부수토지 포함) 및 별장	10%(미등기 40%)	20% (미등기 40%)
비사업용 토지		10% (미등기 40%)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20%

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법법 §62의2)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의 법인세 신고 대신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신고특례 적용대상 자산

① 소법 §94①(3)에 해당하는 주식과 법인령 §99의2①의 자산

☞ 대주주의 상장주식과 장외거래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

② 토지·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

③ 소법 §94①(2)(4)의 자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 등

2)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등 양도소득 특례 신고 방법을 적용하여 신고한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손금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과세표준=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세표준 계산방법(법법 §62의2④, 법인령 §99의2③)

양도가액, 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를 준용하여 계산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자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 제외)에는 그 자산을 출연한 자가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3) 세액의 신고 납부

위 2)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는 소득세법 제105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하며(법법 §62의2⑦), 이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법인칙 §57의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정신고·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한 달(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월내

해당 사업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법법 §62의2⑧단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법인령 §99의2⑤).

4) 양도자산이 비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기 ‘가. 2)’의 방법과 같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에 따른 가중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의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법법 §62의2②).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비영리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자산양도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가중된 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됨(법규법인2014-92, '14.7.11.)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임대하던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처분수입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해당 토지의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법규법인2014-198, '14.6.25.)

-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던 기간에 토지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는 지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던 기간에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후 같은 사업연도 내에 수익사업을 영위하였더라도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조항(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을 적용할 수 있음(대법원2010두 3763, '12.1.26.)

- 쟁점부동산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외대상 여부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 소유의 주택이고, 위 조항은 비사업용토지와 달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외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과세특례제외대상인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등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에 맞추어 법인의 주택양도소득에 대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주택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고, 재무제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2022-구-7317, 2023.05.30.)
- 비영리내국법인은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이 아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62조의2의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법인세과-1290, '09.11.17.)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지원

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부법 §26①⁽¹⁸⁾, 부령 §45)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②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함)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 ④ 공익을 목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 ⑤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의 저작권 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
- (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사)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 (사) 한국방송작가협회
 - (사)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 (사) 한국음반산업협회
 - (사)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사)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 (재) 한국문화정보원
 - (사) 한국영화배급협회
 - (재) 한국언론진흥재단
 - (사)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 (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 ⑥ 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교육재단이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인 학교의 설립·경영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용역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 공익법인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익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교유의 사업목적에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1. 한국반공연맹 등이 주관하는 바자(Bazaar)회 또는 의연금모집 자선회에서 공급하는 재화
 2. 마을문고 본부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책장 등 재화(부통칙 26-45-1)
 -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45조에 따른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45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2. 자체기금 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부통칙 26-45-2)

-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제공하는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대상임(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9, '15.8.31.)
-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용역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법규부가2013-556, '14.3.14.)
-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비영리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현황 조사 및 분석, 과업방향 및 목표설정, 도시디자인 기본구상,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부가2013-278, '13.8.28.)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683, '13.7.26.)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부가가치세과-1236, '12.12.18.)
- 비영리법인이 정부입찰 위탁사업에 관한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재)한국○○○○이 2010년 2월 19일 여성부 용역사업인 '여성·아동폭력 피해 중앙지원단 설치 및 행정지원' 위탁사업을 조달청과 일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여성부에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부가 2010-101, '10.4.21.)
-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에 위하여 일시적·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법규부가2009-429, '10.1.11.)
- 공익법인이 소유한 체육시설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공익법인 소유의 체육시설(수영장, 헬스, 에어로빅 등)을 일반인에게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심2005서3130, '06.6.2.)
- 공익단체가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수익사업관련 재화는 과세대상임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 등이 자체기금 등의 조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수익사업관련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서면3팀-801, '04.4.23.)

나.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부법 §27(4), 부령 §52)

종교의식·자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다음의 재화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1) 사원 기타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3) 구호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또는 사회복지용에 직접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5. 출연자의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과세

가.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 과세(소법 §88(1), 소령 §159)

출연자(개인)가 공익법인에 채무인수 조건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출연하는 경우 채무상당액 만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토지, 건물, 일정한 주식·출자지분, 사업용 유·무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소법 §94①)

나. 부담부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부법 §9①·§26①⁽²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법인에 무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용 자산을 공익법인에 채무인수 조건부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부담부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익단체에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공익단체가 인수한 채무액 중 건물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2, '14.5.28.)
- 의료법인에게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인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동 사업자의 채무를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1197, '12.11.30.)

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1.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상증법 §48⑤, 상증령 §41)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산에 관한 서류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제출 서류

1) 결산에 관한 서류

공익법인은 결산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상증령 §41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에 한정)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현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 (법령해석과-3478, '21.10.6.)

2)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상증규칙 §25①)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상증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상증규칙 별지서식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별지 제23호 서식)
- ②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별지 제24호 서식)
- ③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 서식)
- ④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 서식)
- ⑤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 서식)
- ⑥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별지 제26호 서식)
- ⑦ 이사 등 선임명세서(별지 제26호의2 서식)
- ⑧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별지 제26호의3 서식)
- ⑨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여 주무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서류(상증법§48②(1)단서 관련)
 - ☞ 주무부장관이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인정 필요
(’13. 2. 15. 이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분부터 적용)

나. 제출 기한

공익법인은 결산에 관한 서류 및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익법인의 사업연도는 당해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며, 사업연도가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상증령 §41①, 상증규칙 §11).

다. 보고서 등 미제출 가산세(상증법 §78③)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에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과세합니다.

☞ 1억원(중소기업기본법 §2①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5천만원)을 한도로 함.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한도 없음(국기법 §49①)

2.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상증법 §50의3, 상증령 §43의5)

가. 개 요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 이면서 ②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이고 ③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세무 업무 가이드 맵(Map)> 공익법인종합안내 > 공시/공개 등록 > 결산서류 등 공시등록

□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대상 개정 연혁(상증령 §43의5, '10년 이후 개정 분)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이 5억원 이상
* '11. 7. 25.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이 3억원 이상으로 대상 확대
* '14. 1. 1.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으로 확대
* '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나. 공시의무 제외대상 공익법인(상증령 §43의5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종교법인)

* 다만,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p.109 '신고대상', 상증령 §41의2⑥)인 경우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결산서류 등 표준공시의무 대상에 해당함

다. 공시대상 결산서류 등(상증법 §50의3, 상증령 §43의5③)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은 다음의 서류를 표준서식(상증규칙 별지 제31호)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① 재무제표*
 - * 공익법인회계기준 §5에 따라 공익법인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으로 구성
- ②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 ③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 ④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 ⑤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와 첨부된 재무제표
 - * '19. 1. 1. 이후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 ⑥ 주식보유 현황 등에 관한 사항
 -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
 -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p.109 '신고대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 * '17. 2. 7. 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 상증법 §50 ③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 * '13. 2. 15.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라. 결산서류 등의 간편서식 공시(상증령 §43의5④)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간편서식(상증규칙 별지 제31호의2 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편서식 공시대상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결산서류 등을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22.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공시에 대하여는 가산세 미부과

마. 공시요구 및 오류시정 요구 불이행시 가산세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증법 §50의3②).

국세청장은 공시요구를 하거나 오류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의 주무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상증령 §43의5⑤).

세무서장등의 공시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부동산인 경우 상증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상증법 §78⑪).

다만,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22.12.31.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공시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78⑪).

바. 공익법인등 공시자료의 제공

국세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결산서류의 제공을 신청한 자에게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상증법 §50의3③, 상증령 §43의5⑥).

- ① 국책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②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 ③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청이 「전자정부법」 제72조 제4항에 따라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 ④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감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

* ①, ②는 '19. 2. 12. 이후 공시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③은 '21. 2. 17.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기한 내에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공시업무 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서류등의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2019.6.30.까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2차 안내에도 불구하고 공시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조심-2021-광-5528, '22.5.4.)

- 초·중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재무제표를 공시하는지 여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주무관청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재무제표를 포함한 각 호의 서류를 작성·공시하여야 하는 것임(공익중소법인지원팀-877, '22.9.16.)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어 국세청장이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재공시한 결산서류 등의 공시내용에 여전히 오류가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법령의 부지·착오 외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조심-2021-인-3059, '21.11.26.)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공시의무 여부 판단 시 제외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판단할 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않음(상증세과-177, '13.6.4.)
- 상증법상 공익법인의 경우에 공시의무가 있음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재산-1193, '09.6.17.)
-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출연재산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납세협력의무 이행 필요
지정추천 신청을 하지 않아 더 이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출연재산을 보유하는 이상 공익법인으로서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잔여 출연재산을 모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후 귀속분에 대하여 납세협력의무를 면제함이 타당함(서면-2022-법인-2595, '22.9.7.)

3.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상증법 §51)

공익법인등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 및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가. 장부의 작성방법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 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중으로 대차 평균하게 기록된 전표와 증빙서류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포함)와 영수증에 의하여 재산의 보유, 운용상태와 수입·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160조 및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작성·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작성·비치된 것으로 보며, 장부와 증빙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 보존장치에 저장된 것을 포함합니다.

나.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가산세(상증법 §78⑤)

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할 공익법인등이 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불이행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text{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1}) + \text{출연재산가액2}) \times 0.07\%$$

- 1)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합계(상증령 §80⑦(3))
- 2)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가액과 회계감사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함(상증령 §80⑧)

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상증법 §78⑤, 상증령 §80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상증령 §43②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가산세 대상입니다. (상증령 제31446호 부칙 §11)

- 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상증령 §43②(1))
 - *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되는 수입금액
 - ☞ '13. 12. 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은 총자산가액 10억원 미만인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에서 그 적용대상이 확대됨
- ②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출연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함)(상증령 §43②(2))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함)(상증령 §43②(3))

(비교)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가 있습니다(법법 §112 단서).

• 법법 §112 【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 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

• 법법 §75의3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내국법인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단, 비영리내국법인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

4.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상증법 §50)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 등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였으나, '17.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세무확인대상에 포함됨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확대(상증령 §43 ②, '10년 이후 개정 분)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이 5억원 이상
* '11. 7. 25.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이 3억원 이상으로 대상 확대
* '14. 1. 1.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나.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상증령 §43②)

자산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증법§50②)

- ①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되는 수입금액
- ②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출연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함)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의 회계 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함)

다. 세무확인 실시·보고 기한(상증령 §43⑥, 상증규칙 §14③)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상증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보고 미이행 가산세(상증법 §78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등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text{MAX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1) + 출연재산가액2)} \times 0.07\%, 100\text{만원}3)$$

- 1)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거나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연도 수입금액(상증령 §80⑦(1))
- 2)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가액과 회계감사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함(상증령 §80⑧)
- 3) '1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 1억원(중소기업기본법 §2①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5천만원)을 한도로 함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한도 없음(국기법 §49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5항 본문 중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 금액'에서 수입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의 수입금액을 의미함 (재산-168, '09.9.9.)

마. 외부전문가(2명 이상)

외부전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외부전문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습니다.

□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상증령 §43①)

1. 해당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설립자(이하 "출연자 등") 또는 임직원**
 - * 출연자 :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출연한 사람 제외
 - ** 임직원 :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포함
2. 출연자 등과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제1호(친족 등), 제2호(사용인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
3. 출연자 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 등이 영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회사를 말함)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

- 의 거래가 있는 사람
4. 해당 공익법인 등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외에 해당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6. 제1호(임직원은 제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

바. 세무확인할 사항(상증령 §43⑤, 상증규칙 §14①)

외부전문가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적정하게 공익목적사업에 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출연재산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 출연재산의 3년내 공익목적 사용 및 사용내역의 적정 여부
-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주식보유기준 초과 여부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중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금액 이상 공익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 출연재산가액에 일정기준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 공익사업 수혜자의 적정 여부 등

② 자기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 출연재산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가액으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는지 여부 등

③ 기타 공익법인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이사 중 특수관계인의 기준 초과 여부 및 특수관계인의 임직원 채용 여부
- 특정법인에 대한 광고·홍보 여부
-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준수 여부
- 각종 보고서의 제출 여부
-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공익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등

④ 세무확인 보고

- 상증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부록 참조)

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작성 및 보고

외부전문가는 위 세무확인사항을 확인하여 공익법인 등이 작성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상증규칙 §25① 각 호 서식)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고,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상증규칙 별지 제32호 서식)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은 공익법인 등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 결산 보고서 및 그 부속 서류,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는 외부전문가가 확인한 사실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5%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법인세과-2912, '20.8.13.)
-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연도 단위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과-4137, '20.11.19.)
- 외부감사받은 경우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개정 전)
전문대학을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재산-2790, '08.9.11.)
☞ 상증법 제50조제3항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는 학교법인이 자진해서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면제
☞ (법개정) '17. 1. 1. 이후 사업연도 분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에도 세무확인대상에 포함
- ❖ 자산총액의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대상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공익중소법인지원팀-391, '22.4.19.)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자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산총액 30억원 이상('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자산총액 5억)의 공익법인에서 말하는 자산총액은 고유목적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가액을 말함(서면4팀-793, '08.3.25, 재삼46014-1295, '97.5.23.)
 -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여부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관련하여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에는 국고보조금을 포함함(법인세과-4135, '20.11.19)
- ❖ 가산세 부과
 - 세무확인 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계산 방법
세무확인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총출연재산가액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뿐 당해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1만분의 7을 곱하여 산정(국심2003서3502, '04.4.20.)
 - 세무확인 불성실가산세 적용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정의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불성실가산세 적용시,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연재산가액 '누계액'이 아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출연받은 '연간' 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심2003구2247, '03.10.15.)

■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보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2000두5944, '02.4.12.)

❖ 기타사항

■ 공익법인의 세무대리 수행 회계사 및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배제대상인지 여부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와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가 속한 회계법인에 소속된 다른 회계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따른 세무확인 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5, '23.7.13.)

5.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상증법 §50③)

가. 개 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연도의 ①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②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 외부 회계감사의무 제외대상 공익법인등(상증령 §43③④)

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 등

㉠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일 것

㉡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일 것

㉢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일 것

* ㉠, ㉡은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상증령 제12조제1호(종교), 제2호(학교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위 외부 회계감사의무 제외대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더라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20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외부 회계감사의무 대상에 해당함

다. 감사보고서 제출(상증령 §43⑦)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의무 미이행시 가산세(상증법 §78⑤(3))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래 산식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17.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text{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1}) + \text{출연재산가액 2}) \times 0.07\%$$

- 1) 외부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상증령 §80⑦(2))
- 2)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가액과 회계감사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함(상증령 §80⑧)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 외부 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의료법인이 3년 이상 의료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공익중소법인지원팀-1823, '22.12.9.)
-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됨(법인세과-2882, '20.8.12.)
- 외부회계감사 제외 대상인 공익법인 해당 여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육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음(상속증여세과-838, '18.9.7.)
- 외부회계감사 제외 대상인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확인 시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여부
총 자산가액이 100억 미만인 공익법인은 외부 회계감사인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 해당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에 확인요청할 때에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법규재산2013-178, '13.6.25.)

공익법인 회계 감리제도(상증법 §50⑥, 상증령 §43의3)

(‘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개 요

기획재정부장관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음(기획재정부장관은 감리 및 자료 제출 요구 업무를 한국공인 회계사회에 위탁*)

*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회계감사의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리업무 수수료로 받을 수 있음

□ 관련 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이 공시한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를 할 수 있음

-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의 방법에 따라 감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익법인의 회계 관련 법령 위반사실의 확인을 위해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감리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 또는 감사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감리 결과 해당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또는 상증세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의 경우 해당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과 감사인의 명단 및 위반내용을 주무관청, 국세청,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 ④ ③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통보내용에 따라 해당 감사인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상증법 §50④, 상증령 §43의2)

(‘2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개 요

일정 규모 이상 공익법인이 연속하는 4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자유선택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2개 과세연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음(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인 지정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

□ 지정 대상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천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 (지정기준일) 지정대상이 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되는 날

- 지정기준일 이전 4년 이내에 상증세법 §50⑤에 따른 감리를 받은 공익법인으로서 상증세법 §50의4①에 따른 회계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공익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공익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금융감독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과학기술연구기관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지정 절차

- ① 지정대상 공익법인은 과세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다만, 지정대상인 2개 과세연도 중 두 번째 과세연도 및 그 직후 3개 과세연도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② 국세청장은 공익법인 및 지정하려는 감사인에게 지정기준일 4주 전까지 지정 예정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함(다만, 신속한 지정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③ 공익법인 및 지정하려는 감사인은, 지정 예정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의견 제출 가능(국세청장은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의견 반영 가능)
- ④ 국세청장은 지정기준일까지 지정감사인을 지정하고, 공익법인 및 지정감사인에게 각각 통지
- ⑤ 공익법인은 지정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함
다만, 공익법인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해 줄 것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국세청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음)

-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지정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⑥ 지정감사인은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을 국세청장에게 제출

□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상증법 §78⑤)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의 1만분의 7을 가산세로 부과

6.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의무(상증법 §48○13 , 상증령 §41의2)

가. 개 요

종전 주식기준 초과보유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을 통해 5년마다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았으나,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의무이행 여부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종전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명칭통합

** 다만,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름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청장에 보고하고, 국세청장은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과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나. 신고대상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이 주식을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 중 상증법 §48⑪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공익법인입니다(상증령 §41의2⑥).

- ①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상증법 §16②, 상증법 §48①, 상증령§38②①)

출연받은 주식 등의 초과여부는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의 주식 등을 합한 것(가+나+다)으로 판단합니다(상증법 §16②(1)).

- 가.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다.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보유 의무이행 신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상증령 §38② (1)가목	아래 1)~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에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상증법 §16③(1))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상증령 §42②(1))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상증령 §42②(2)) 4) 위 3)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상증령 §42②(3))
상증령 §38② (1) 나목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상증법 §16③(3))

- ② 상증법 §48②(2)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 포함) 및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공익법인 등(상증령§38②(2))

- 취득한 주식 등의 초과여부는 출연받은 재산 등으로 취득한 주식 등과 다음의 주식 등을 합한 것(가+나+다)으로 판단합니다(상증법 §48②(2)).
 -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 다음 어느 하나(A~C)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A. 아래 1)~4)의 공익법인 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않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면서(상증령 §13⑥),

-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상증령 §42②(1))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상증령 §42②(2))
- 4) 위 3)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상증령 §42②(3))

다음 ㄱ)~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상증령 §13⑦)로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상증령 §38②(가))

- ㄱ)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거나 임원의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 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의 특수관계인 및 공익법인등 출자법인[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로 한정한다)

B.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상증령 §38②(나))

C.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상증령 §37⑥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증령 §38②(다))

< 상증령 §37⑥ 각 호 >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같은 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 회사를 설립할 것
2.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이 기술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말한다), 신기술창업전문 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자회사 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 ③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공익법인(상증법 §48⑨)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상증령 §38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상증령 §38⑭에 따른 가액이 0보다 큰 공익법인등**

*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 이행시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이거나 상증령 §42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주식보유 의무이행 신고대상에서 제외(상증령§38⑳)(3))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해당 기업을 의미함(상증령 §38⑬)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및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위 나목의 자와 상증령 §2의2①(1)*의 관계에 있는 자
 - *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소속 기업 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④ '96.12.31.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으로서, 해당 주식 등을 5% 초과하여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상증령§38⑳)(4))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이거나 상증령 §42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주식보유 의무이행 신고대상에서 제외

-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상증령§42②(1))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상증령§42②(2))
- ㉢ ㉡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상증령§42②(3))

다. 의무이행 요건(상증법 §48⑪, 상증령 §41의2①②③)

신고대상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주식초과 보유분에 대하여 증여세 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①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 ②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삭제, ’23 사업연도는 종전규정 또는 개정규정 중 선택 적용)
- ③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상증령 §38 ⑫의 사유(1. 이사의 사망 또는 사임 2.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로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하여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요건을 계속하여 충족한 것으로 봄
- ④ 상증법 §48③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 ⑤ 상증법 §48⑩에 전단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 의무이행 요건은 아니나 의무이행 대상이 외부 회계감사(상증령 §43③,④), 전용계좌 사용(상증령§43의4 ①), 결산서류 공시(상증령§43의5①)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라. 의무이행 여부 신고방법(상증법 §48⑬, 상증령 §41의2⑦)

신고대상 공익법인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상증규칙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등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
- ②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및 정관
- ③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④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등 선임명세서
- ⑤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 ⑥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에 따른 출연자 등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 ⑦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 ③~⑦ 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제50조제2항 및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이미 제출하거나 공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미신고 시 가산세(상증법 §78⑭)

신고대상 공익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 등의 자산총액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1억원(중소기업기본법 §2①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5천만원)을 한도로 함.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한도 없음(국기법 §49①)

... 주요 상담사례

Q.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제는 무엇인가요?

A. 기준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을 통해 국세청장의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았던 제도가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매년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의무이행 요건 충족 여부를 신고하는 것으로 전환된 제도입니다(상증법§48⑬, 상증령 §41의2⑦).

신고대상 공익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 등의 자산총액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상증법 §78⑭).

Q. 주식기준 초과보유분에 대하여 이미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에도 매년 의무이행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주식기준 초과보유분에 대하여 증여세 또는 가산세를 신고(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된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의무이행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재산상속46014-849, '00.7.11.).

Q. 주식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A. 의결권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결권 없는 배당우선주가 의결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주식기준 초과보유분에 대하여 의무이행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상증법§48①, 재재산-741('11.9.14.)).

Q. 종전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을 받았지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공익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는 주식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의무 이행요건 충족여부를 매년 신고하는 제도이므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공익법인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Q. 주식기준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의무이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A. 주식기준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의무이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주식기준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이행하지 못한 요건에 대해서도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별도 부과됩니다(상증법 §48⑩).

Q. 주식기준 초과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국외주식도 포함하나요?

A. 국외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하여야 하며, 주식기준 초과보유 여부는 내국법인의 주식에 한정하여 판단하므로, 출연·취득한 국외주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상증법 §48①, 상증세과-552('13.09.16)., 서면4팀-441('05.03.24.)).

- Q. 주식배당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초과보유하는 경우 주식 보유 관련 의무 이행 신고를 해야 하나요?
- A.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의 운용소득 포함)과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식기준 초과보유를 판단하므로,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증법 §48②(2), 법령해석과-1315('19.5.26.).
- Q. 상증법 제48조제11항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기한 내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 A. 신고기한(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해당 사업연도말 자산총액×0.5%)가 부과됩니다(상증법 §78④).

7.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상증법 §50의2, 상증령 §43의4)

가. 개 요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증령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종교법인)은 제외*합니다(상증령 §43의4①).

- *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p.109 '신고대상')인 경우 20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전용계좌 사용 대상임

여기서 전용계좌란 ①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으로서 ②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며(상증령 §43의4②), 공익법인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습니다(상증령 §43의4③).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등)

또한 공익법인등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수입과 지출,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상증령 §43의4⑨).

나. 전용계좌 사용의무 거래(상증법 §50의2①)

- ①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상증령 §43의4④).

- 송금 및 계좌 간 자금이체
- 수표·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②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 다만, 현금으로 직접 받은 경우로서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로부터 5일 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제외함. 이 경우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상증령 §43의4⑤)

- ③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 ④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기부금·장학금·연구비·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상증령 §43의4⑥)
- 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 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다. 전용계좌 외 거래명세서 작성 보관

전용계좌 사용대상거래가 아닌 경우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전용계좌 외 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산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에 수록·보관하여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상태에 둔 때에는 전용계좌외 거래 명세서(상증규칙 별지 제29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관한 것으로 봅니다(상증법 §50의2②, 상증령 §43의4⑦).

- ☐ 전용계좌 외 거래명세서 작성·보관 제외대상(상증령 §43의4⑧)
- ① 소득세법 §160의2②(3)(4)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갖춘 경우
 - ② 거래건당 금액(VAT 포함)이 1만원('08. 12. 31.까지는 3만원) 이하인 수입과 지출 등
 - ③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208의2①(2)~(8), 소득세법 시행규칙 §95의3(2)~(4), (7), (8)의3~(8)의6의 수입과 지출(상증규칙 §14의4)

라. 전용계좌 개설, 변경 및 추가(상증법 §50의2③)

공익법인은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변경·추가) 신고서를 납세지(본점이나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익법인등으로 고시하여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으로 보는 경우(법인령§39①(1)바목)에는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16. 1. 1., '17. 1. 1. 또는 '18.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으로서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 6. 30.까지 개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용계좌를 변경·추가하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상증법 §50의2④, 상증령 §43의4⑩).

* (주의) 지점법인에서 지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음

마. 의무 미이행시 가산세(상증법 §78⑩)

- ①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 ②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MAX((1), (2))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times B/C \times 1\text{천분의 } 5$$

A : 해당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

B : 해당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

C : 해당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일수

(2) 전용계좌 사용의무대상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바. 적용시기

- ①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 '08. 1. 1. 이후 최초로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 또는 지출 분부터 적용
- ② 의무위반 가산세 규정 : '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상속증여세과-461, '19.5.28.)
-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현물)
공익법인 등이 기부금을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에 현물로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상속증여세과-1308, '17.12.7.)
-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21.12.21. 개정 전의 것)
공익법인이 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설·신고 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9, '17.10.17.)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 관계없이 전용계좌 사용의무 및 공시를 이행해야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0조의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및 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재산세과-309, '11.6.27.)
- 학교법인의 등록금 계좌는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이 아님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와 등록금을 교육사업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재산-3956, '08.11.25.)
- 국가출연금 수입계좌 및 연구비 수입계좌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여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출연금 수입계좌, 국가연구개발 및 민간 연구개발(수익사업 관련) 목적으로 지급받은 연구비 수입계좌 등은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사용 의무 규정의 적용대상

이 아님(재산-3781, '08.11.14.)

-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및 정기예금은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 아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로서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경우 당해 정기예금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산-2789, '08.9.11.)
-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상장주식을 주식계좌로 출연받거나, 비상장주식을 현물로 출연받은 후 상장되어 주식계좌로 입고하여 해당 주식계좌가 수익용 계좌로 사용되고 해당 주식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금은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계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법령해석과-3037, '21.8.31.).

... 주요 상담사례

- Q. 후원금 수령 계좌 외에 사업비 계좌도 만들 때마다, 폐기할 때마다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A.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계좌는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변경·추가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상증법 §50의2①③④, §43의2②③⑩).

8.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 적용의무(상증법 §50의4)

가. 개 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공익법인의 외부 회계감사(상증법 §50③)와 결산서류 공시(상증법 §50의3)는 의무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기초가 되는 회계기준은 부재하여 공익법인마다 상이한 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공익법인 간에 비교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에서 공익법인 회계기준(기획재정부 고시 2017-35)을 제정하였고 공익법인 등이 외부 회계감사 의무,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나. 적용제외(상증령 §43의6②, 상증규칙 §14의5)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인천대학교

다. 적용시기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18. 1. 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18. 1. 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의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익법인과 '18. 1. 1.부터 '18.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신설되는 공익법인은 '18. 1. 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와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단식부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9.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제출 의무(법법 §112의 2)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제출의무(법법 §112의2①②)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부금액 등이 포함된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법인칙 제75의2 서식)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08. 12. 31. 까지 :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 '09. 1. 1. ~ '09. 12. 31. :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 '10. 1. 1. 부터 :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
- ** '21. 7. 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의무(법법 §112의2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법인칙 제75호의3 서식)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21. 7. 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과세자료 제출 > 소득·법인세 관련 자료제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내역 조회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의무 위반시 가산세(법법 §75의4)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신청한 해당 금액으로 함)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 외의 경우 :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20. 1. 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2%에서 5%로 가산세율 개정

②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경우 :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적용하지 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제출하는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경우 연간 출연(기부)금액 50만원 이상분은 출연자별 출연명세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10.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법법 §120의3·§121)

가. 개 요

과세자료는 직·간접적으로 과세의 근거가 되게 하는 자료이며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납세 의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협력 의무입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과세자료제출의 납세협력의무가 있으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합계표등 과세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부법 §54⑤, 부령 §99)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아래의 법인, 단체(부령 §99)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부법 §54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각급학교 기성회·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년 2월 10일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법법 §120의3, 법인령 §163의2①).

다만, 부가가치세법 §54⑤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끝난 후 25일 이내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0분의 5(법법 §75의8①(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법법 §75의8).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의 경우에는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법인령 §120③).

다.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 제출(법법 §121⑤)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매년 2월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0분의 5(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법 §75의8, 법인령 §120③).

IV.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익사업 지원을 위하여 공익법인에 다양한 조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공익법인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출연재산 사용의무 등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그 목적사업에서 벗어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공익 법인에 증여세 또는 가산세 등을 과세하게 됩니다.

1.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상증법 §48②(1), 상증령 §38)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하고, 3년 이후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 개 요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상증법 §48②(1)괄호, 상증령 §38②)

- ①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과
 - ②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허가 필요('13. 2. 15. 이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상증령 §38②)

1.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과다 인건비(법인령 §56㉡)

→ 다음의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 중 8천만원 초과분

* 해당 사업연도 근로기간1년 미만 : 12개월로 환산(총급여액을 근로기간 월수(1월미만 1월)로 나눈 금액 × 12)

① 법법 §29①(2)에 따라

- ㉠ 해당 연도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과,
- ㉡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5개 사업연도 동안 수익사업 소득 합계액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

② 조특법 §74①(2)1) 및 (8)2)에 따라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 ㉠ 해당 연도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과,
- ㉡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5개 사업연도 동안 수익사업 소득 합계액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

* 과다 인건비 제한 예외(법인령 §56㉡단서)

→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인건비 지급규정 및 주무관청의 승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2.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전기료·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상증통칙 48-38..2)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출연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 당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용 등

출연받은 재산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재원으로서 공익법인이 이를 임의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조세지원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하고, 3년 이후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용 중단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됨(상증법 부칙 17654호 §3)

그러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3년 이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합니다(상증령 §38③).

①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 (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이 인정한 경우('11. 1. 1.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

☞ 주무부장관이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인정 필요('13. 2. 15. 이후 인정하는 분부터 적용)

② 해당 공익목적사업 등의 인·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곤란한 경우 ('21. 2. 17.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이 경우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상증법§48②(1)단서), 만약에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공익목적 출연재산을 사용기한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여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출연재산명세서 등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면 증여세부과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임(대법원96누 3494, '97.6.13.)

다.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3년 이내 미사용 또는 3년 이후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1) 증여세 과세가액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였거나 미사용된 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 ① + ② + ③)

- ①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재산의 가액
- ②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미사용 또는 미달 사용한 재산의 가액
- ③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

* ③은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다만, 출연받은 재산 중 일부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출연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상증령 §38⑨).

* '04. 1. 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①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출연받은 재산 등이 감소된 경우

☞ 다만,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상증령 §2의2 ① (1)의 관계(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에 있는 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제외

* 국기령 §1의2 ①(1)~(5)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

② 출연받은 재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증여시기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증여시기로 봅니다(상증령 §48②, 상증기본통칙 48-39...6③).

- 48-39...6 【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③ 영 제39조제3항, 영 제40조 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은 각 규정에 따른 가액을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일46014-10322, '02.3.15.)

3) 가산세 적용 제외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재산-186, '11.4.12.)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법규과-591, '09.5.22.)

라.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출연받은 재산(상증법 §48②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승§38 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써 상증령 §12(1)의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현금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종교사업에 부동산 및 주식 등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은 사후관리 대상입니다.

마.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상증법 §4의2⑥)

공익법인등이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여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당초 출연자에게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이 상증법 제48조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여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한함)로서 다음의 요건(상증령 §3의3②)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① 상증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재산 출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② 위 ①의 기간 중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사를 제외함)이 아니었어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였을 것
- *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100에 상당하는 그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자하여 출연한 자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과 공익목적사용 의미

-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에 한정해야 하는 것임

공익법인 사후관리규정의 입법취지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사후관리대상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에 한정해야 할 것임(조심 2010구

3122, '11.5.17.)

-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출연재산 해당 여부
출연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 등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상속증여세과-147, '19.2.19.)
- 공익목적사업 사용 준비는 공익목적사용으로 볼 수 없음.
상증세법 및 시행령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의 범위 및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으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매각대금의 사용용도가 그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단지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서울행정법원2018구합 78718, '20.1.9.)
-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적용 시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의 의미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규정 적용 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의 의미는 수익사업의 영위를 의미하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사후관리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임(법령해석과-4164, '20.12.17.)
-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판단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상증통칙 48-38...3 1호)
- 임야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임야를 출연받을 당시 이미 개발 제한구역 내에 있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종교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법률상 장애사유를 알았거나,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으므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1두25807, '14.1.29.)
-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범위
교회재산을 부목사, 전도사 등의 사택으로 사용함은 직접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나, 경내에 있는 경우로서 그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공익목적사업사용에 해당함(재산-213, '09.9.14.)
- 간호사들의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의료법상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간호사들에게 복리후생용으로 제공되었다 할 것이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조심-2012-중-4043, '13.4.18.)
- 차입금 상환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재재산-322, '08.2.25.)
- 운용소득 등으로 차입금 상환시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등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 상당액은 매각대금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익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등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하지 않음(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 '17.1.12.)

- 출연받은 공동품을 박물관에 전시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공동품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서 당해 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에 전시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해당(서면4팀-1044, '07.3.30.)
- 거마비, 경조사비, 판공비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익법인 등이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거마비, 경조사비, 판공비 등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볼 수 없음(서일46014-10258, '02.2.28.)
- 출연받은 건물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받은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제도46014-12636, '01.8.11.)
-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 해당 여부 등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예치한 상태에서 동 기부금을 출연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이 매년 미사용한 기부금 잔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이자수입)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규정된 기준금액 이상을 먼저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해 동 기부금을 당초 출연자의 의사에 따른 사용계획보다 더 긴 기간동안에 걸쳐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 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초 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기로 한 계획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다르게 사용한 사업이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지급한 대가 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공익중소법인 지원팀-807, '22.8.18.)
- ❖ 공익목적외 사용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 판단
 -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하고 출연자가 해당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증여세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은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임(법령해석과-582, '18.3.6.)
 - 공익목적사업에 확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임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됨으로써 각 토지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거기에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대법원 2011두12580, '13.6.27.)
 - 산학협력단이 출연재산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재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법규재산2013-82, '13.3.28.)

- 출연자등이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학교법인이 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등에게 건물부지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그 학교법인을 위하여 건물을 물상담보로 제공한 것은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대법원 2009두17575, '11.10.13.)
 - 출연받은 재산을 국가 등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등에 기부하는 것은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19-상속증여-1612, '19.7.15.)
 -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재산-161, '11.3.30.)
 - 등산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종교시설에 출연한 토지가 어떠한 종교시설도 없이 등산로로 이용되는 등 종교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조심2010전2070, '10.11.8.)
 -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 (재재산-806, '10.8.25.)
 - 증여세 과세된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적용 여부
공익법인이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재산-540, '10.7.26. 재재산46014-321, '95.8.17.)
 - ☞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을 사후관리하여 다시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
 - 공익법인이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출연재산 보고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 사후관리의무 위반시 공익법인에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함
 -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받은 출연자는 같은 법 §31⑤에 의하여 그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4탐-2999, '07.10.18)
 -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연자는 당해 금전 및 증여세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서면4탐-3003, '07.10.18.)
- ❖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여부
- 청구법인은 출연 당시 그 소재지의 도시구역 형편상 쟁점임야의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서 쟁점법률조항

단서 외의 본문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그 후 3년 이내에 그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동일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에게 상증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상증령 §38③의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는 출연 당시에는 사용에 제한이 없었거나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알지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 (조심 2019중2673, '20.8.31.)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출연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공익중소법인지원팀-1312, '22.10.19.)

❖ 증여세 과세시점 판단

-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미사용시 과세요인 발생 및 증여재산 평가시점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이후에 위 규정이 정한 과세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증여로 의제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함 → 출연 재산을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대법원 2015두50696, '17.8.18.)
-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일을 증여세의 과세요건 성립일로 볼 지 여부
공익법인 기출연재산을 주무부장관 등이 승인한 사용기간내에 목적의 동일 또는,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 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지 못한 채 공익법인이 설립허가가 취소되었다면 청산절차 등을 거쳐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가 아닌, 그 설립허가 취소일을 증여세의 과세요건 성립일로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함은 정당함 (조심2008구3556, '09.6.9.)

… 주요 상담사례

Q.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임대용 부동산 등 수익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에도 직접 공익 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나요?

A.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해당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에 해당합니다(상증통칙48-38-2).

Q. 설립 당시 기본재산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경우,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A.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수입하는 이자(배당)소득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현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12, '21.2.26.).

Q. 출연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토지를 출연 받아 그

토지 위에 예배당을 건축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예배당 건물신축공사를 착공한 때에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상속증여세과-120('13.5.14.), 재산세과-360('10.6.4.))

Q.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경우에도 출연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요?

A.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접 공익 목적사업 등 외로 사용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즉시 과세하는 것입니다(상증법 §48②, 서일46014-10322('02.03.15.)).

Q. 2018년에 출연받은 부동산을 2022년 이후 공익목적 사용을 중단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A.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용 중단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2018년에 출연받은 부동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다가 2022년 이후 공익 목적 사용을 중단하면 그 사용하지 아니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증법 제17654호 부칙 §3).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상증법 §48②(4), 상증령 §38④⑦, 상증규칙 §11의2)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 매각대금의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 개 요

매각대금이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으로 증가한 재산을 포함한 총 매각대금에서 사후관리가 적용되는 출연재산의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지방세를 차감한 것'을 말합니다(상증법 §48②(2), 상증령 §38⑦).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는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재산은 제외(상증규칙 §11의2))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19. 2. 12.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됩니다(상증령 §38④).

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

하는 것입니다(상증령 §38④).

따라서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상증령 §40①(3))

증여세 과세가액 = (① + ②)

① 매각대금*의 사용기준금액** $\times \frac{\text{목적 외 사용금액}}{\text{매각대금*}}$

② 사용기준금액** 미달사용분

* 매각대금에는 증가된 재산이 포함되며 당해 자산의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됨

** 사용기준금액 = 매각대금 $\times 90\%$

다. 사용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출연재산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30%, 2년 이내에 6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비율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상증법 §78⑨(2), 상증령 §38⑦).

● 매각대금 사용기준

사용기간	의무 사용비율	미달하여 사용하는 경우
1년 이내	30%	미달 사용액의 10% 가산세 부과
2년 이내	60%	미달 사용액의 10% 가산세 부과
3년 이내	90%	미달 사용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부과

* 다만,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이 공익법인의 이사·사용인의 불법행위로 감소되거나, 도난·분실된 경우 해당 금액을 출연받은 재산가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함(상증령 §38⑨)

부동산 매각에 따른 처리요약

- ① 출연재산은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함
- ②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으로 사용되는 것 포함)하다가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은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함
- ③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다가 매각한 경우에도 매각대금은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함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판단

■ 6개월 이상의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의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1, '16. 6. 7. 법제처 16-0422, '17.1.26.)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재재산-827, '11.10.4.)

■ 종교단체가 교인 등에게 매각대금을 대여하는 경우

교회가 교인 등에게 대여기간 6개월 이상으로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대여하는 경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재산세과-213, '09.9.14.)

■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전세보증금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건물의 임차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재산세과-3144, '08.10.7.)

■ 임·직원이 거주할 사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거주할 사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상증, 서면인터넷방문 상담4팀-3696, '07.12.27)

■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 내지 그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매각대금을 사용한 날'은 당초 비과세하였던 증여세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당하므로, '사용한 날'을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함(서울고등법원 2018누 58198, '19.1.31.)

■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주무관청 허가 없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공익법인의 주식취득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사용한 날을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임(서울행정법원-2017-구합-66848, '18.7.19.)

■ 출연재산 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실질적, 중국적으로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려는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용으로 인한 법적 효과나 이익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곧바로 귀속되지 아니한 채 중간에 별도의 매각대금의 사용(처분)행위가 개입되는 경우에는 그 중간 사용(처분)행위를 두고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2020-누-36351).

❖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 중증재산 매각대금을 중증원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중증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중증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중증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상증세과-00805, '16.7.15.).

■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의 적용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출연받은 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됨(재산-3957, '08.11.25.)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목사의 개인계좌로 이체되는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조심2013중3163, '13.11.14.)

■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에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

공익법인 사후관리규정의 입법취지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사후관리대상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에 한정해야 할 것임(조심-2010-구-3122, '11.5.17.)

■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사후관리시 매각대금의 10%를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매각대금 총액(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고 해당 자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가액임)으로 계산하는 것임(법령해석과 -527, '16.2.23.)

■ 공익법인 등의 선물거래 이익 등이 운용소득인지 매각대금인지 여부

공익법인 등의 해외 콜옵션부 채권의 매각과 관련하여 그 이자수익은 운용소득으로, 동 채권의 매매익을 포함한 매매대금과 주가지수 또는 환율 선물거래로 얻은 이익은 매각대금으로 보는 것임(재산세과-222, '10.4.7.)

■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 적용 방법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과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출연재산가액 사용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경우 각각 별도로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며, 사용기준금액을 합산한 가액 이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은 아님(공익중소법인지원팀-76, '22.1.26.)

3.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상증법 §48②(3)(5), 상증령 §38⑤⑥)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 개 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란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사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유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며 공익법인 등이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상증통칙 48-38···3).

다만, 종전에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용인 인건비 전액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1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다음의 인건비는 직접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 다음의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 중 8천만원 초과분
 - * 해당 사업연도 근로기간 1년 미만 : 12개월로 환산 [총급여액을 근로기간 월수(1월 미만 1월)로 나눈 금액×12]
- ① 법법 §29①(2)에 따라
 - ㉠ 해당 연도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 법인과,
 - ㉡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5개 사업연도 동안 수익사업 소득 합계액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
- ② 조특법 §74①(2)1) 및 (8)2)에 따라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 ㉠ 해당 연도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 법인과,
 - ㉡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5개 사업연도 동안 수익사업 소득 합계액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
- * 과다 인건비 제한 예외(법인령 §56⑩단서)
 -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인건비 지급규정 및 주무관청의 승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나. 출연재산 운용소득이란

출연재산을 법인세법 제4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을 말합니다.

다만, 사업용 유·무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상증통칙 48-38...4 ①).

1) 운용소득의 사용기준(상증령 §38⑤)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결과 발생한 운용소득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며, 이의 8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전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금액이 있다면(가산세 제외), 이를 해당연도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 가산합니다.

* '22. 1. 1. 전 개시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일반공익법인 70%(성실공익법인 80%) 적용

$$\text{사용기준금액} = (\text{A} - \text{B} + \text{C}) \times 80\%$$

- A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등
 =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연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
 (+)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분리과세를 선택한 이자소득도 운용소득에 포함됨)
 (-)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상증법 §48②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
 (-)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액(합병·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함)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B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C 직전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금액 - 미달금액에 대한 가산세

* '21. 2. 17. 이후 가산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기준(상증통칙 48-38...4)
 ① 사업용 유·무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③ 법 제48조제2항제5호 및 영 제38조제6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수익 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함
 ④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재원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구분에 의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운용소득, 출연재산 매각금액, 출연받은 재산, 기타 재산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봄

2) 사용의무의 탄력적 운용(상증령 §38⑥)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와의 5년 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등이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사업연도별로 많이 지출하거나 적게 지출할 수 있으므로 기준금액과 사용실적을 각각 5년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와의 5년 간의 평균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여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금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법령 개정 전 사업연도에 적용될 의무사용비율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간의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경우, 2021. 12. 31.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70%의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80%의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공익중소법인지원팀-886, '22.9.27.)

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이 운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령 §40①(2)의2).

$$\text{증여세 과세가액} = \frac{\text{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분은 제외)의 평가가액}^*}{\text{평가가액}} \times \frac{\text{공익목적 외 사용금액}}{\text{운용소득금액}}$$

- *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수익용이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에 대한 재무상태표상 가액. 다만, 그 가액이 상증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상증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출연재산 중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주식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상증규칙 §13②③).

출연재산의 평가(상증통칙 48-40...8)

상증규칙 제13조 제3항에서 공익법인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말한다.

라.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

운용소득 중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달하게 사용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상증법 §78⑨(1)). 이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이 출연재산가액의 1%(3%)에 미달하여 사용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와 동시에 해당한다면, 둘 중 더 큰 금액만을 부과합니다.

다만,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나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

하게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를 계산할 때 출연재산 운용소득 중 일부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출연재산 운용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상증령 §38⑨).

* '04. 1. 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①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출연받은 재산 등이 감소된 경우

☞ 다만,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상증령 §2의2 ① (1)의 관계(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에 있는 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제외

* 국기령 §1의2 ①(1)~(5)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

② 출연받은 재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운용소득 해당 여부

■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운용소득 포함 여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라 함은 출연재산으로 영위하는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만을 의미하고,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대법원 2007두26711, '10.5.27.)

■ 익금불산입된 이자소득의 운용소득 가산 여부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에 대한 사후관리시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익금불산입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운용소득에 가산하지 아니함(인터넷방문상담4팀-199, '06.2.6.)

■ 현금배당액과 주식배당액의 운용소득 해당 여부

공익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의한 익금불산입 금액에 관계없이 현금배당액과 주식배당액 전액을 운용소득으로 보는 것임(재재산46014-40, '02.2.15.)

■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분할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이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8, '20.12.4.)

☞ (법개정) '21. 2. 17. 이후 가산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액으로서 주식으로 받은 부분'은 수익사업 소득금액에서 제외함

❖ 운용소득과 사용실적 계산

-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수령액이 사후관리 대상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수령하는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은 사용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등을 적용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35, '23.12.29.)
-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여 증여세 부과시 재산가액의 계산식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한 경우로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말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7, '15.9.2.)
- 예금으로 적립하거나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한 금액의 사용실적 포함 여부
출연받은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예금으로 적립하거나 임대보증금의 반환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으나,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음(재산세과-174, '10.3.19.)
-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산정방법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과 관련하여 5년간 평균금액으로 운용소득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결손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금액은 (0)으로 보는 것임(재산세과-273, '09.9.21.)
- 고유목적사업비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의 포함 여부
당해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포함시키는 것임(서면4팀-665, '08.3.14.)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금액의 포함 여부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사용기준을 계산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산상속 46014-226, '00. 2. 29.)
- 미수배당금 익금산입액에 대한 운용소득 계산방법
공익법인이 2018사업연도까지 현금주의에 따라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실제 수령한 배당금만을 배당금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2015~2018 사업연도 귀속 미수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공익법인이 2020사업연도에 미수배당금을 전액 수령한 후 2015~2018 각 사업연별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경우 미수배당금 익금산입액은 2015~2018 각 사업연도별로 소급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에 가산하는 것임(법령해석과-1980, '21.6.8.)
- 고가주택 취득액을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할지 여부
쟁점재산은 서울 소재 고가주택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AA상 시상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거나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므로 그 취득액을 청구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하여 운용소득 미달사용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조심-2022-부-2298, '22.7.19.)
-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 없이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상증령§38⑤의 '운용소득' 계산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의 금액 계산 시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을 가산하고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소득금

액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이 포함된 금액)을 차감하는 것임(법령해석과-3717, '21.10.26.)

❖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용 여부 판단

■ 차입금 상환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공익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등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하지 않음(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 '17.1.12.)

■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용소득을 예금으로 적립에 사용한 금액은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음.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보는 것임(서면-2023-법인-3494, '24.1.24.)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 등을 신축한 후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소득은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 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724, '13.10.23.)

■ 공익법인 등에 출연 후 반환받은 금전을 1년 이내에 사용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다른 공익법인 등에 조건부 출연 후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반환받은 금전을 그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4팀-3119, '07.10.31.)

■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운용소득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에 가산된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임(서일46014-11679, '02.12.12.)

■ 증여세 추징세액을 운용소득으로 납부시 직접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등을 공익법인에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상속증여세과-181, '19.2.25.)

■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운용소득을 교비회계에 전입하여 교사신축 준비금 적립 시 직접 공익목적 사용 여부

학교법인이 학교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운용소득 중 일부를 교비회계로 전출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6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령해석과-3668, '21.10.22.)

... 주요 상담사례

- Q.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이자, 임대소득 등)을 1년 이내 8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데, 운용소득으로 2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해도 되나요?

- A. 운용소득을 정기에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 이상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정기에금으로 적립한 운용소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실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상증기본통칙 48-38...3 3호, 서면4팀-1899('06.06.21.)).
- Q.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이 운용소득x70%에서 운용소득x80%로 바뀌는 규정의 적용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2021.2.17.개정될 때, 부칙1조(제31446호, 2021.2.17.)에서 운용소득 사용기준이 80%로 변경되는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2021년 귀속 운용소득을 2022년에 사용할 때부터 운용소득x80%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 Q. 출연재산에서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 운용소득인가요?
- A. 정기에금 등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은 운용소득이며,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보통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Q. 운용소득의 80%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그 외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 A.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공익목적사업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상증법 §48①②⑨)

가. 개 요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받거나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 등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 제외)의 상증법 제16조제2항제2호(5%, 10%, 20%)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상증법 §48①,②(2)).

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상증법 §48⑪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 등은 제외)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의 총 재산가액의 30%(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은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상증법 §48⑨).

구 분	판정기준	적용대상		한도	의무위반시
출연 · 취득	출연받을 때 또는 출연재산으로 취득시 지분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있는 경우 또는 상증법 §48⑩ 요건 불충족한 경우		5%	초과분 증여세 부과
		상증법 §48⑩ 요건 충족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	10%	
			의결권 미행사를 정관에 규정한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법인	20%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 주식으로 주무관청 승인받음	한도없음	
			10% 초과 출연분 3년 이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매각	한도없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한도없음	
보유	계열기업의 주식보유시 총재산가액 대비 비율	상증법 §48⑩ 요건 미충족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	30%	초과 보유분 가산세 부과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 이행	50%	
		상증법 §48⑩ 요건 충족한 경우		한도없음	

* 설립허가 법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경우 주식보유한도 적용 배제

상증법 §48⑩요건

- ①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 ②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③ 상증법 §48③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 ④ 상증법 §48⑩에 전단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나.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등의 5%(10%, 2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상증법 §48①, 상증령 §37)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주식 등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 제외)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상증법 §48⑩의 요건 충족시 10%, 의결권 미행사를 정관에 규정한 자선 등 목적 법인은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1) 주식 등 초과 보유 계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초과 보유 부분을 계산합니다(상증령 §37①).

- 공익법인이 주식 등을 매매 또는 출연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 그 취득일
-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라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 규정에 따른 주주명부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 외의 경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 :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주식회사 외의 경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합병을 함에 따라 합병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에 따른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 초과부분 계산 : ㉠ - ㉡ (상증법 §16②(2), 상증법 §48①(1)~(3))

- ㉠ $[(a) + (b) + (c) + (d)] > ㉡$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등1)의 5%(10%2), 20%3))
- ㉠ :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등
- ㉡ : 출연받을 당시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상증법 §48①(1))
- ㉢ :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상증법 §48①(2))
- ㉣ :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상증법 §48①(3))

- 1) '17. 1. 1. 이후 출연받는 분부터는 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 제외 (상증법 §48①본문괄호)
-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상증법 §48①의 요건 충족시 10%
- 3) '18. 1. 1. 이후 출연받은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식 등을 출연받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에 적용

2)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위 기준일에 공익법인이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5%(10%, 2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과세제외 하는 경우

- ① 지분을 20%까지 과세제외(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적용)(상증법 §16②(2), §48①)

- i)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상증법 §48⑩의 요건 충족 공익법인 등
- ii)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공익법인 정관에 규정, 상증령§13③)
- iii)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지출금액의 평균액이 100분의 80 이상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지출한 공익법인 등(상증령§13④)

☞ '18. 1. 1.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상증법 15224호 부칙§9)

② 지분을 한도없이 과세제외(아래 중 하나에 해당시 적용)(상증법 §16③,§48①)

- i) 상증법 §48⑩의 요건 충족 공익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상증령 §13⑦)의 주식 등을 출연받고 주무관청이 공익 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01. 1. 1. 이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ii)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상증법 §48⑩의 요건 충족 공익법인 등이(공익법인 등이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 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주식 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 '11. 1. 1.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 * 출연자와 상증령 §2의2①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
- iii)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
 - ☞ '17. 1. 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주식 등 5% 초과 여부 판정

■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산정기준일(주주총회결의일)

주식의 초과부분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하고,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임(대법원 2016두 36116, '16.7.27.)

대법원 판시요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점과 시행령 조항이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초과부분을 계산하도록 한 것은 감자의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내국법인에 대한 지분 비율이 증가될 수 있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공익법인에게 주주명부폐쇄일까지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기간 내에 처분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을 뿐 가액평가까지 그 기준일을 주주명부폐쇄일로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주주명부폐쇄일이 아닌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야 함

- 주식비율 판단시 간접소유하는 주식 포함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100분의 10)를 초과하는지 여부 판단시, 공익법인등이 간접소유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은 포함하지 아니함(법령해석과-382, '16.2.5.)
- 주식비율 판단시 국외주식 포함 여부
국외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주식 5%(10%)초과 여부는 내국법인의 주식에 한정하여 적용함(상속증여세과-552, '13.9.16.)
-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한 개정 규정 적용 시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제1항 단서에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한 개정 규정은 2017. 1. 1. 이후 공익법인이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법령해석과-2147, '18.7.27.)
- ❖ 舊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
 - 신설 성실공익법인의 개정 성실공익법인 요건 적용
신설 공익법인은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적용. 다만, 설립 이후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시까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서면법규과-1319, '14.12.16.)
 - 성실공익법인으로 적용받는 시기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해당 주무관청에 확인 신청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확인받은 경우, 요건을 충족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적용(서면법규과-1167, '14.11.6.)
 - 외부회계감사 제외 대상인 성실공익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 해당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에 확인요청할 때에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법규재산2013-178, '13.6.25.)
 - 외부회계감사 제외 대상인 학교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외부회계 감사대상이 아닌 학교법인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일부만 감사를 받은 경우 성실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재산-63, '09.1.8.)
 -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지 않더라도 요건 충족시 성실공익법인인지 등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지 않더라도 요건 충족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해당 계좌를 신고한 경우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4, '20.3.6.)
- ❖ 주식보유기준 초과 등에 대한 증여세
 - 합병으로 인하여 공익법인의 지분율이 5% 초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발행주식총수의 5% 이하)을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이 그 합병존속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

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245, '21.12.21.)

☞ '23.2.28. 상증령 §37①(4) 개정 →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합병을 함에 따라 합병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지분율 초과시 증여세 과세대상임

■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 공익법인에 이전시 증여세 과세 여부

상증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다시 과세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74, '11.11.14.)

■ 의결권 없는 배당우선주가 의결권을 가지게 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없는 배당우선주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게 된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1, '11.9.14.)

■ 동시 출연시 5%(10%) 초과분 산정방법

- 사실관계: A(성실공익법인, 기존에 갑주식 7%보유), B(성실공익법인), C(일반공익법인)
- 질의내용: 갑법인 주식 3%씩을 A,B,C 공익법인에 동시에 각각 출연시 증여세 과세가액
- 답변: 내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3개의 공익법인 등(A,B,C)에 발행주식 총수의 3%씩을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 A성실공익법인등과 B성실공익법인은 1.5%를 초과하는 부분, C일반공익법인 등은 3%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됨(재산-420, '10.6.21.)

■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식보유기준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이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서면4팀-1385, '08.6.10.)

■ 주식보유기준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날 현재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서면4팀-30, '08.1.7.)

❖ 특수관계 해당 여부

■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의 범위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 비영리법인 설립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를 의미함(서울고등법원 2017누154, '17.12.6.)

■ 특수관계인 중 사용인 및 임원의 범위

상증령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임원은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법령 제20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함(상속증여세과-956, '16.8.30.)

■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임(대법원 2011 두6899, '12.10.11.)

■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산세과-3772, '08.11.14.)

■ 성실공익법인 등 판단시 이사의 범위

성실공익법인 판정시 이사의 범위에는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상속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이사의 선임 등 당해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를 포함함(재산세과-125, '09.9.3.)

❖ 기타사항

■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무관청의 범위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무관청이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검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뜻하는 것임(법인세과-4259, '20.11.30.)

■ 출연받은 주식등을 수익용으로 운용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다까지 출연받은 경우로서 해당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배당소득)의 원천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법§48②(1)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31, '21.3.31.)

다. 출연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상증법 §48②(2), 상증령 §37)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와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과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재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와 지방세 제외)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 등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상증법 §48① 요건 충족 공익법인 등은 10%, 2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 주식 등 초과 보유 계산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초과보유 부분을 계산합니다(상증령 §37①).

- 공익법인이 주식 등을 매매 또는 출연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 그 취득일
-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라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 규정에 따른 주주명부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 외의 경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 :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주식회사 외의 경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합병을 함에 따라 합병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에 따른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 초과부분 계산 : ㉠ - ㉡

- ㉠ $[(a) + (b) + (c) + (d)] > ㉡$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등1)의 5%(10%2), 20%3)) (상증법 §48②(2)㉠~㉣)
- ㉠ :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
- ㉡ : 취득 당시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가)
- ㉢ :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나)
- ㉣ :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다)

- 1) '17. 1. 1. 이후 출연받은 분부터는 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 제외 (상증법 §48①본문괄호)
-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상증법 §48⑩의 요건 충족시 10%
- 3) '18. 1. 1. 이후 출연받은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식 등을 출연받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신평의법인에 적용

2)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상증령 §37②후단)

출연자가 해당 내국법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출연자(상증령 §2의2③)

- i) 상증령 §2의2①(6), (7)에 해당하는 법인
- ii) 상증령 §2의2 ①(1)~(7)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상증령 §40①(2))

5%(10%, 20%)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4) 과세제외하는 경우(상증법 §48②(2), 상증령 §37⑥)

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 i)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 ii) 공익법인 등(상증법 §48⑪)의 요건 충족 공익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이
 - iii)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 iv)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01.1.1. 이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 '17. 1. 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i)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같은 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또는 「벤처기업 육성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것
 - ii)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이 기술지주회사인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 (산학협력단 등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각 산학협력단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50 이상을 말함),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100분의 30 이상일 것
 - iii)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자회사 외의 주식 등을 보유하지 않을 것
- ☞ '08. 1. 1. 이후 주식 등 취득 분부터 적용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출연 또는 취득 제한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이란 같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의미하는 것임(재산-347, '10.5.28.)
- ❖ 주식 5% 초과 취득 판단시기
-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보유하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식 취득비율(5%, 10%) 초과 여부는 주식전환일을 기준으로 판정함(서면법규과-419, '13.4.12.)
- 감자결의 시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으로 주식 초과 보유 여부 판정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한 주식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비율 초과여부 판정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로 하는 것임(재산-934, '10.12.13.)

❖ 주식 5% 등 초과 취득에 대한 증여세 과세

■ 현물출자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유지분율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2개의 일반 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인 (갑) 법인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에서 현물출자로 인하여 동시에 (갑) 법인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2개의 일반공익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 현재 (갑) 법인 보유지분율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상속증여세과-380, '14.10.2.)

■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이 동시에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개의 일반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에서 동시에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일반 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성실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은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지분율 5%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서면법규과-557, '14.5.30.)

■ 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해당 여부

공익법인이 '93. 12. 31. 이전부터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상속증여세과-591, '13.10.31.)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일 현재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발행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함으로써 그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당해 공익법인 보유주식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전환일 현재 시가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서면4팀-3004, '07.10.18.)

■ 5% 초과시 지분율 변동유무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

'93. 12. 31. 현재 동일종목의 주식을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94. 1. 1. 이후 유상증자에 의하여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지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지분율 변동유무에 불구하고 5% 초과지분의 증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재삼 46014-872, '96.4.3.)

■ 주식배당으로 주식보유기준을 초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성실공익법인이 주식배당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 하는 경우 주식배당은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 불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8, '19.5.15.)

■ 산학협력단 아닌 공익법인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상증세법 제16조제3항제3호의 규정의 신설 취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및 법률의 엄격해석 원칙 등을 감안할 때, “공익법인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밖의 법령”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산학협력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인 乙벤처를 설립하면서 쟁점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심사-증여-2022-0013, '22.7.6.)

☞ '23.7.27. 1심 국승(2022구합24437, 대구지법)

... 주요 상담사례

Q. 공익법인 주식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하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A.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와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과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재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와 지방세 제외)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 등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상증법 §48⑪ 요건 충족 공익법인 등은 10%, 2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Q. 상증법 §48⑪ 요건 충족하면 여러 회사 주식을 각각 10% 취득이나 출연받을 수 있나요?

A. 상증법 §48⑪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등의 10%까지 각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증법 §48⑪ 요건〉

- ① 운용소득의 80%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 ②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③ 상증법 §48③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 ④ 상증법 §48⑩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라. 5%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의무(상증법 §49)

구 상증법 (§8의2 ①)이 '90. 12. 31.에 상증법 4283호로 개정 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발행 주식총수의 20%, '93. 12. 31.에 상증법 4662호로 개정 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발행 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등을 과세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개정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공익법인이 지주회사화 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동일종목의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지 않고 보유주식을 우량종목 주식 등으로 대체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96.12.30.에 상증법 5193호로 개정 시 상증법§49를 신설하여 '96. 12. 31. 현재 공익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식을 20%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5년('01. 12. 31. 까지)내에, 5% 초과 20% 이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3년('99. 12. 31. 까지)내에 그 초과분을 다른 주식으로 대체하여 보유하거나 처분하도록 하는 「5% 초과 보유주식 매각의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1) 5% 초과 보유주식 판정(상증령 §42⑤, 상증법 §48① 단서, ②(2))

$[(a) + (b) + (c) + (d)] > \text{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등} \times 5\%$

① : 출연 또는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

② : 출연 또는 취득 당시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③ : 출연 또는 취득 당시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 ㉔ : 출연 또는 취득 당시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상증법 §16 ②·§48 ① 본문)

2) 주식 처분유예기간

- ① 5% ~ 20% 이하 보유 : 3년 이내 → '99. 12. 31. 까지 처분
 ② 20% 초과 보유 : 5년 이내 → '01. 12. 31. 까지 처분

3) 주식매각 의무 적용 제외 공익법인 등

다음의 공익법인은 주식 매각 의무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① 상증법 §48⑪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 (상증법 §49①단서)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및 이에 준하는 공익법인(상증령 §42②)

- ㉑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㉒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㉓ ㉒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4) 주식매각 의무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상증법 §78④)

공익법인 등이 주식처분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그 보유기준(5%)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과세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text{가산세} = 5\% \text{ 초과보유주식의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시가} \times 5\%$$

※ 나중에 취득한 주식부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상증령 §80⑥).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2 이상의 공익법인이 동일한 법인 주식 보유 시
 주식보유기준을 초과해 2 이상의 공익법인이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여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주식수 산정시, '성실공익법인' 보유분은 제외됨(재재산46014-81, '01.3.21.)
-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적용 배제
 공익법인 등이 '97. 1. 1. 이후 내국법인의 주식 5%를 초과 취득해 취득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규정은 적용 안 됨(재산상속46014-849, '00.7.11.)
-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부칙조항(상증령 부칙 제20621호, 2008.2.22.) 문언에 따라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

조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그 반대해석상 위 시행일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대법원-2022-두-56906, '22.1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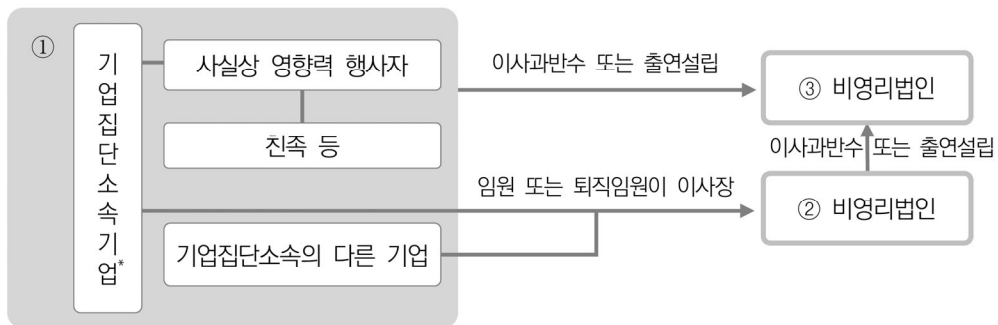
마.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한도(상증법 §48⑨)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 방지를 위한 규정(동일한 내국법인 주식 5% 또는 10%, 20% 초과 보유 금지) 외에 공익법인 등*의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30%(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를 이행하는 경우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합니다('99. 12. 28. 개정 시 신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과 상증법 §48⑩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

1)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상증령 §38③)

다음 ①~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①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해당 기업(해당 기업과 함께 ①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을 말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상증규칙 §2)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증규칙 §2①)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및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의 자와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

② 상기 ①의 본문 또는 가)에 따른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③ ① 및 ②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초과보유분에 대한 주식 등 처분유예기간(법률 부칙 제6048호 §7③)

그 초과분 중 1/2이상은 '00. 12. 31. 까지, 나머지는 '01. 12. 31. 까지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3) 초과보유에 대한 가산세 부과(상증법 §78⑦)

공익법인이 주식처분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총자산가액의 30%(회계감사, 전용계좌의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서면4팀-3490, '07. 12. 6.)

☞ 50% 완화규정은 '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가산세=30%(또는 50%) 초과보유주식의 매 사업연도 말 현재의 시가×5%

※ 나중에 취득한 주식부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상증령 §80⑩).

4)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상증령 §38⑭)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초과하는 주식 등의 가액 = ㉠ - (㉡×30% 또는 50%)

㉠ : 이동평균법(법인령 §74①(1)㉠)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과 재무상태표상의 가액 중 적은 금액

㉡ : 공익법인 등의 총재산(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함)에 대한 재무상태표상의 가액에 ㉠가액을 가산한 가액

5) 가산세 부과 예외(상증법 §48⑨ 상단 괄호)

다음의 공익법인 등에는 계열기업 주식보유 한도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상증법 §48⑪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공익법인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 ㉡의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계열기업주식 보유 적용대상

- 계열기업 주식보유제한규정은 내국법인 주식에만 적용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주가가액이 공익법인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주가가액의 5%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즉 내국법인 주식에만 계열기업 주식보유제한규정이 적용됨(서면4팀-441, '05.3.24.)

- 계열기업 주식보유제한규정은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해 적용

공익법인 등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여 계열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의 시가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바, 당해 주식 등에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의미함(주식(출자지분)명세서 작성요령 참조)(서일46014-11705, '03.11.25.)

cf)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한다는 서일46014-11301('03. 9. 17.)은 잘못된 예규임

❖ 계열기업주식 초과 보유 가산세

- 계열법인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 적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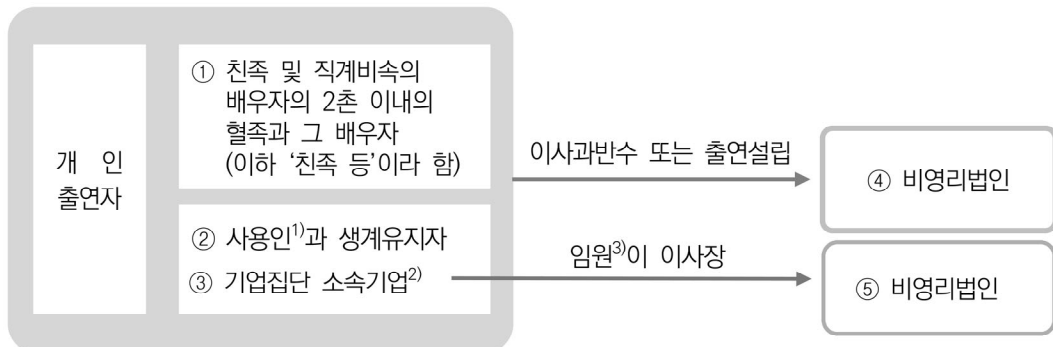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개정된 것)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 감사,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과 사용,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 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부감사와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와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재산-549, '11.1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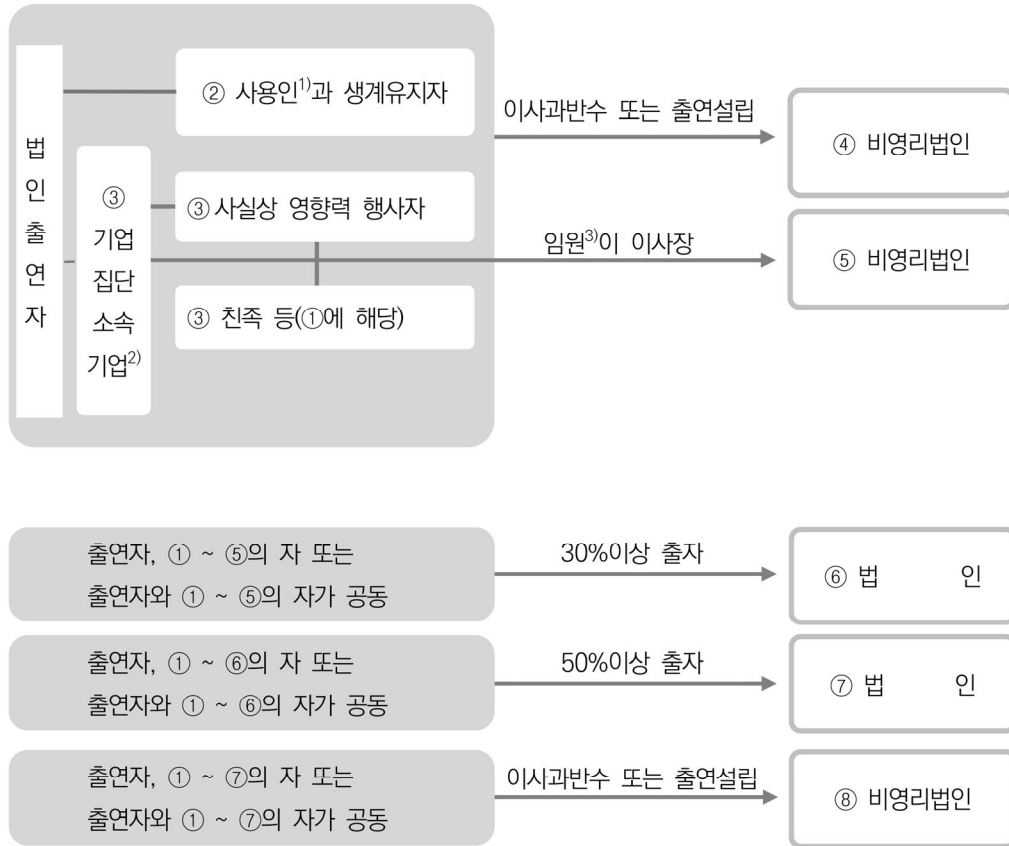
-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인적분할에 따라 분할 전 법인의 주식보유비율만큼 교부받게 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공익중소법인지원팀-663, '22.7.4.)

특수관계인의 범위(상증령 §2의2)

* 출연자와 다음 ① ~ ⑧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1)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⑥, ⑦, ① ~ ⑦이 5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포함
- 2) 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 후 3년(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퇴직임원) 포함
- 3) 임원 또는 퇴직임원

특수관계인의 범위 설명 (①~⑧의 관계)

- ① 출연자의 친족*,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 *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4) 친생자로서 타인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5)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국기령 §1의2 ①)
 - ** 국기령상 친족의 범위가 '23.3.1. 이후부터 변경됨(혈족: 6촌 → 4촌, 인척: 4촌 → 3촌,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추가)
- ② 출연자의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포함)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출연자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 임원,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상증령 §2의2②)
-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
 - ① 출연자가 개인인 경우
 - 출연자가 직접 또는 출연자와 ①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

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포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상증규칙 §2)로서 공정위 '기업집단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법인령 §40①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1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퇴직임원)

㉠ 출연자가 법인인 경우

- 출연법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 포함)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①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④ 출연자, ①부터 ③까지의 자 또는 출연자와 ①부터 ③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⑤ ③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⑥ 출연자, ①~⑤의 자 또는 출연자와 ①~⑤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⑦ 출연자, ①~⑥의 자 또는 출연자와 ①~⑥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⑧ 출연자, ①~⑦의 자 또는 출연자와 ①~⑦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사용(상증법 §48②(7), 상증령 §38⑬⑭⑮⑯)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상증령 §38⑩) 및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상증법 §48⑪)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상증법 §78⑨(1)와 (3)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 적용(상증법 §78⑨)

가. 의무사용 기준금액(상증령 §38⑬⑭)

① 출연재산가액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의
(총자산가액**-(부채가액+당기순이익))

*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총자산가액 중 해당 공익법인이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재무상태표 및 운영 성과표를 기준으로 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이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의 가액은 직전 5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함('2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다만, 상증령 §41의2⑥에 따른 공익법인 등(주식보유관련 의무이행신고대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상증령 §43③에 따른 공익법인등(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가액이 「상증법 제 4장 재산의 평가(§60~§66)」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

출연받은 재산 중 일부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출연받은 재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상증령 §38⑨).

1)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출연받은 재산 등이 감소된 경우

☞ 다만,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상증령 §2의2 ① (1)의 관계(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에 있는 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제외

* 국기령 §1의2 ①(1)~(5)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정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

2) 출연받은 재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② 사용 기준금액 : 출연재산가액의 1%

다만, 상증법 §16②(2)(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등)이 동일 내국법인 주식등을 발행주식총수 등의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가액의 3%

나. 직접 공익목적 사용

① 범 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상증법 §48⑭, 상증령 §38②)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포함합니다.

☞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허가 필요('13. 2. 15. 이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

용)

●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상증령 §38②)

1.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과다 인건비(법인령 §56㉪)

→ 다음의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 중 8천만원 초과분

* 해당 사업연도 근로기간 1년 미만 : 12개월로 환산(총급여액을 근로기간 월수(1월 미만 1월)로 나눈 금액×12]

① 법법 §29①(2)에 따라

㉠ 해당 연도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과,

㉡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5개 사업연도 동안 수익사업 소득 합계액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

② 조특법 §74①(2)¹⁾ 및 (8)²⁾에 따라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일반 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 해당 연도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과,

㉡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5개 사업연도 동안 수익사업 소득 합계액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

* 과다 인건비 제한 예외(법인령 §56㉪단서)

→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인건비 지급규정 및 주무관청의 승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필요

2.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전기료·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②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계산의 탄력적 운용(상증령 §38㉠)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합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계산할 때 공익법인등이 해당 공익목적사업 개시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지출실적 산정기준은 (1)당해 과세연도 등 사용실적 (2)당해 과세연도와 직전 4개 과세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제38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공익법인등이 직

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 의무사용 제외대상 공익법인(상증령 §38②, §43의5①②)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종교법인)
- ②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 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 * 부동산인 경우 상증법 제60조,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 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
-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위 의무사용 제외대상 공익법인(①~③)에 해당하더라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20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사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라. 의무 미이행시 가산세(상증법 §78⑨(3))

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나, '2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주식 5% 등 초과 보유 공익법인(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은 100분의 2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합니다.

*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상증법§78⑨(1))와 위 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 적용 (상증법 §78⑨본문)

(사용 기준금액 -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100분의 10
(단, 5% 등 초과 공익법인은 100분의 200*)

단, 상증법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2024. 1. 1. 전에 상속세,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나, 2023. 12. 31.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공익법인 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선택 적용 가능합니다(법19932호 부칙 §4).

□ 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사용 개정 연혁

적용 사업연도	의무사용 대상	사용 기준금액	제재규정
'18.1.1.이후 ~	성실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의 1%(3%1))	기준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 부과
'21.1.1.이후 ~	성실공익법인 자산 5억, 수입금액등 3억 이상 법인	출연재산가액의 1%(3%1))	

'22.1.1.이후 ~	주식 5% 등 초과보유 법인 자산 5억, 수입금액등 3억 이상 법인		출연재산가액의 1%(3% ¹⁾)	가산세 부과 동일-주식 5% 초과분 증여세 부과
'24.1.1.이후 ~	주식보유의무 이행신고대상 O	주식 5% 이하 보유 법인	출연재산가액의 1%(3% ¹⁾)	기준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
		주식 5% 초과 보유 법인		기준미달사용액의 200% 가산세 ²⁾
	주식보유의무 이행신고대상 X	자산 5억, 수입금액등 3억 이상 법인		기준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

-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산·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등이 동일 내국법인 주식등을 발행주식총수 등의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가액의 3%
- 2) (경과규정) 주식 5% 등 초과 보유 공익법인(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은 2023년 사업연도에 지출의무 위반시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와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또는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중 선택가능(법19932호 부칙 §4)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의무사용규정이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8항 및 제19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법인세과-3128, '20.8.28.)
- 성실공익법인의 의무지출금액 미달사용에 따른 가산세 적용시 주식 5% 초과보유 판정
성실공익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에 1회라도 주식을 5% 초과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법령해석과-836, '20.3.19.)
-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과 운용소득 사용 의무기준액을 각각 별도로 충족하면 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기준금액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 기준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법인세과-4335, '20.12.07.)
- 의료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의료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의료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서 공익목적사업이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의료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법규과-191, '22.1.18.)

-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 초과 보유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 괄호의 규정에 따라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 초과 보유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공익중소법인지원팀 -1499, '22.11.24.)

6.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상증법 §48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료법인은 제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가. 개 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출된 직·간접 경비 전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①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 ② 상증령 §38⑪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료법인 제외) 등의
- ③ 현재 이사 수(5명 미만은 5명으로 봄)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 ④ 임·직원(이사 제외)이 되는 경우

●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임·직원 범위(상증령 §80⑩)

- ① 병원의 의사
 - ② 학교의 교직원*
 - ③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 ④ 도서관의 사서
- * 교사, 교장, 교감, 총장, 학장 등(직원은 「사립학교법」 §29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만 해당)
- ⑤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 ⑥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 ⑦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상증칙 §21에서 정하는 연구원('21. 2. 17. 이후 경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나. 출연자의 범위(상증령 §38⑩)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

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상증령 §2의2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p.169 참고)

라. 공익법인 등(의료법인 제외)의 범위(상증령 §38⑪)

- ① 출연자와 상증령 §2의2①(3)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② 출연자와 상증령 §2의2①(4)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③ 출연자와 상증령 §2의2①(5) 또는 (8)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마. 이사 기준 등 위반에 대한 가산세(상증법 §78⑥, 상증령 §80⑩)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 기준(1/5)을 초과하는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되는 경우 그 사람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차량유지비 등 직·간접경비 상당액 전액을 매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① 상증령 §38⑫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이사의 사망 또는 사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로 1/5을 초과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
 ☞ '16. 1. 1. 이후 결정하거나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 ② 임·직원 중 병원의 의사, 학교의 교직원¹⁾,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상증칙 §21에서 정하는 연구원²⁾과 관련된 경비
 1) 직원은 「사립학교법」 §29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만 해당
 2) 연구원은 '21. 2. 17. 이후 경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적용하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 이사 수 기준·특수관계자 범위
- 공익법인 등 이사에 대한 가산세 적용 방법

공익법인 등의 이사에 대한 가산세 적용시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각 출연자별로 판단함(서면4팀-333, '07.1.24.)

■ 이사 초과 가산세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 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재산-1119, '09.6.5.)

■ 이사의 범위

이사에는 이사회 의결권을 갖지 아니하는 감사는 포함되지 아니함(상증통칙 16-13...3 ②)

■ 이사요건 위반 판정기준일

이사 현원 1/5 초과 여부는 등기일이 아닌 이사의 실제 선임일을 기준으로 판단(대법원-2024-두-58128, '24.11.5.)

■ 이사 초과 가산세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 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재산-1119, '09.6.5.)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이사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중임된 이사의 취임시기(재산세제과-1076, '20.12.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출연자 및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1/5을 초과하여 초과 이사와 관련된 지출경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이사가 임기가 끝난 후 연속하여 이사에 임명된 경우 동 이사의 취임시기는 최초 취임일임

■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기간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13, '23.7.27.)

■ ‘출연자’를 개인 출연자만으로 한정하는지 및 공익법인과 출연자의 사용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출연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 등에게 당해 재산을 출연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출연자와 법인출연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로 규정된 자를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출연자의 사용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기준-2022-법무재산-0200, '23.12.18.)

❖ 가산세 부과

■ 공익법인의 임원 관련 경비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가산세로 부과하고 직·간접경비에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비도 포함됨(법령해석과-1010, '19.4.24.)

■ 이사 기준 초과시 의료법인은 가산세 부과 제외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사를 제외)으로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나 의료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함(재산-299, '10.5.17.)

■ 직·간접경비 환수하는 경우 가산세 환급 여부

공익법인 등의 이사취임 관련 제한 위반으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해당 직·간접경비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환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재산-210, '09.9.14.)

■ 공익법인의 임원 관련 경비에 대한 가산세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지출된 직접 또는 간접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동 임·직원이 공익법인의 중요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가산세를 부과함(국심2004구2559, '04.11.30.)

■ 공익법인 이사수 기준을 초과한 이사에게 지급한 급여 환수시 가산세 부과 여부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수의 5분의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 그 초과한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공익법인 등이 가산세가 부과되기 전에 그 초과한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를 환수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임(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22, '21.10.29.)

■ 공익법인 임직원 관련 가산세 부과시 제외대상에 요양보호사가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 대괄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에 있어「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기준-2023-법무재산-0067, '23.10.6.)

■ 가산세 부과대상 경비에 미지급급여 포함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의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는 공익법인이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4조에 따라 계상한 미지급 급여가 포함되는 것임(서면-2024-법규법인-3830, '24.11.28.)

... 주요 상담사례

Q. 공익법인의 이사가 10명인 경우 이사선임 제한 기준(1/5) 인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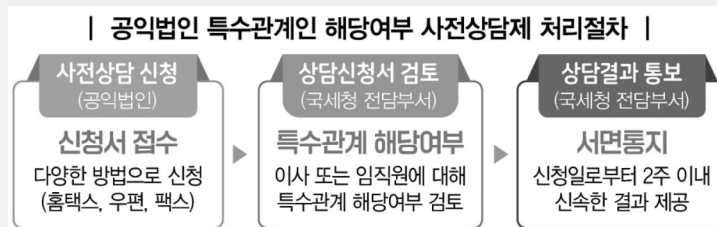
A. 공익법인의 이사가 10명인 경우 공익법인의 이사선임제한기준(1/5) 인원은 2명이며, 2명을 초과하여 선임된 이사에 지출된 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Q.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 관련하여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사제외) 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러면 이사와 동시에 임직원이면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A. 특수관계자 이사인 경우 이사 기준 규정(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1/5를 초과하지 않을 것)에 따르면 임직원에서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사전상담제 안내

- ❖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사전상담 제도란?
 - 법령이 복잡하여 공익법인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사전에 상담하는 제도입니다.
- ❖ 신청대상
 - ①이사 또는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공익법인과 ②이사 또는 임직원을 신규 또는 변경하여 채용하고자 하는 공익법인
- ❖ 신청방법
 - 홈택스, 우편, 팩스 및 방문접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신청경로: 홈택스 ▶ 세무 업무별 서비스 ▶ 공익법인종합안내 ▶ 공익법인 사전상담 신청 ▶ 홈택스 신청하기로 이동하기 ▶ 신청서식(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첨부하여 제출
 - 우편 보내실 곳: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 팩스 접수: 0503-110-9067로 발송
- ❖ 사전상담제도 처리절차



... 주요 상담사례

- Q. A주식회사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B에 지난 해 (주)C에서 퇴사한 직원D가 이사로 취임하고자 하는 경우 D는 B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A주식회사와 (주)C는 같은 기업집단 소속)
- A. 직원D는 공익법인 B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C의 임원이었다면 퇴직 후 3년(5년)까지 상증령 제2조의2제1항제3호(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퇴직임원)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 Q. 공익법인의 출연자 E법인의 임원G가 퇴임 후 같은 해에 공익법인의 직원으로 고용되는 경우 공익법인과 G는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 A. 임원G는 출연자(법인)의 사용인(퇴직임원)에 해당하므로 상증령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7.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상증법 §48⑩, 상증령 §38⑮)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상증령 §38⑬)

「4.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 마. 1)의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나. 광고·홍보의 범위(상증령 §38⑮)

가산세를 부과하는 광고·홍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신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 등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는 제외)
- ② 팜플렛·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는 제외)

다. 광고·홍보에 대한 가산세(상증법 §78⑧, 상증령 §80⑫)

위 나. ①의 경우 : 당해 광고·홍보매체의 이용비용

위 나. ②의 경우 : 당해 행사비용 전액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광고, 홍보 금지 위반 여부
 - 공익법인이 상증법 제48조제10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특수관계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출연받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대상 아님(공익중소법인지원팀-230, 2023.02.10.)

8. 자기내부거래 시 지켜야 할 일(상증법 §48③, 상증령 §39)

자기내부거래라 함은 특수관계인간에 내부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된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가. 과세대상 자기내부거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출연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예 : 임대차, 금전소비대차, 사용대차 등)에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상증령 §39②).

- ① 출연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이 사용하는 경우
- ②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이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
 - * 정상적인 대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i) 상증법상 시가(상증령 §32③)
 - a. 부동산임대용역 : 부동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율(2%)
 - b. 그 외의 경우 : 법인령 §89④(2)에 따라 계산한 금액
 - ii) 법인세법상 시가(법법 §52②, 법인령 §89)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 금액)(‘18.2.13.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사용)
-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 하는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교육기관이 특정 연구시험용 시설 및 건물 등* 출연받아 출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 * 출연받은 기부금에 의하여 설립한 건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에 규정된 시설 및 설비(상증규칙 §12)
- ④ 해당 공익법인 등이 의뢰한 연구용역 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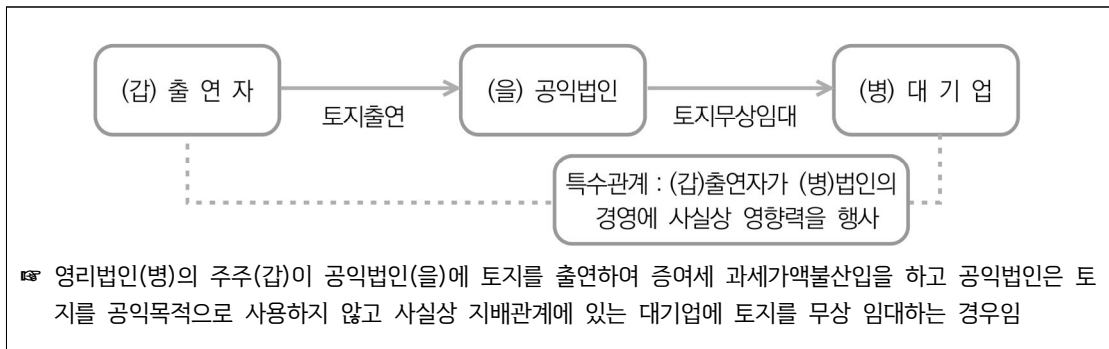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 등의 범위(상증법 §48③, 상증령 §39①)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
3. 출연자가 「민법」§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상증령 §2의2①(1)의 관계*에 있는 자
4. 출연자(상증령 §2의2①(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가 위 3. 이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상증령 §2의2①(1)의 관계*에 있는 자
 - *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5. 출연자(상증령 §2의2①(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의 사용인
6. 출연자(상증령 §2의2①(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의 임

원

7. 출연자(상증령 §2의2①(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상증령 §2의2③)
8. 출연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임원과 퇴직임원포함)과 해당 기업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친족 등
9. 출연자가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자기내부거래 예시



공익법인 등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영 제3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그 공익법인 등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상증통칙 48-39...7).

다. 증여세 과세방법(상증령 §39③)

- ① 출연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과세
- ②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과세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상증통칙 48-39...6)

-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대가없이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 해당 출연재산가액
2.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

당해 출연재산가액 × (정상적인 대가 - 실제 지급한 대가) / 정상적인 대가

② 영 제39조제3항, 영 제40조제1호 및 동조 제4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은 각 규정에 의한 가액을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 법 제60조부터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자산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출연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당해법인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자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출연하는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여금 채권을 출연받은 경우에 출연재산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출연받은 후 이자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됨 (서일46014-10948, '02.7.22.)

9.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 금지

(상증법 §48②(8), 상증령 §38②(2))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혜택을 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가.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정계층에 제공된 재산가액이나 경제적 이익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그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①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②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 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변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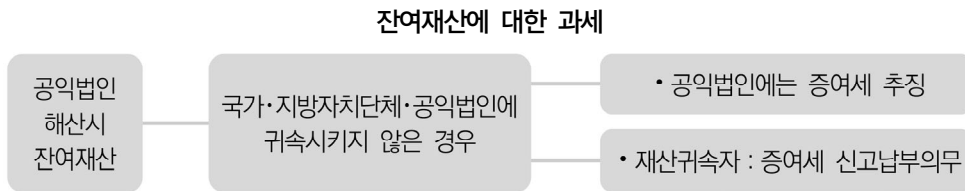
☞ (사례) 공익법인이 특정지역 자녀의 장학금 지원사업을 정관에 명시하고 출연자도 같은 목적으로 출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국심2003서1779, '03.10.15.)

이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해당 공익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협의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되는 것임(재산-288, '10.5.13.)

10. 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일(상증법 §48②(8), 상증령 §38⑨(1))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이므로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가.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잔여재산을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상증령 §38⑨).

- ①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잔여재산이 감소된 경우
 - 다만,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상증령 §2의2①(1)의 관계(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에 있는 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제외
- ② 출연받은 재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나.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대한 과세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하여 증여세(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포괄승계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합하는 3개 공익법인이 통합공익법인이 되어, 그 통합공익법인이 「민법」 제80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받아 포괄적으로 통합된 기관의 재산과 수행사업을 승계(정관에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통합법인이 해산하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잔여재산은 새로운 출연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법령해석재산-0050, '16.2.25.)
- 흡수합병되는 경우 잔여재산 과세 여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에 흡수합병됨으로써 종료하는 학교 법인의 잔여재산 전부가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되어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상속증여세과-426, '13.7.26.)
-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일을 증여세 과세요건 성립일로 볼지 여부
공익법인 기출연재산을 주무부장관 등이 승인한 사용기간내에 목적의 동일 또는,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 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지 못한 채 공익법인이 설립허가가 취소되었다면 그 설립허가취소일을 증여세의 과세요건 성립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함은 정당함(대구고등법원2013누1219, '13.11.22.)
- 잔여재산을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재산세과-840, '09.11.24.)
- 농어촌지역 등에 소재한 학교를 폐교조치하면서 그 잔여재산을 '03.12.31. 이전에 출연자의 자녀 등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서일46014-11270, '02.9.27.)

V.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과 소득세법상 공익단체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과 비교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과 소득세법상 공익단체는 사회복지, 교육, 종교 등 공익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포함됩니다.

※ 상증법상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소득세법상 기부금단체의 범위 비교

공익법인 (상증령 §12)	기부금단체 (법인법 §24·법인령 §39·소득령§80)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	

2. 학교, 유치원 설립·경영사업 3.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8. 법인법\$24②(1)에 따른 특례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특례기부금[법인법\$24②(1)]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 및 국군장병 위문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교육기관 등에 시설·교육·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 ·병원에 시설·교육·연구비로 지출 ·한국학교·전문모금기관(기재부 지정·고시)
9. 법인령\$39①(1)에 따른 기부금단체(공익법인 등)와 소득령\$80①(5)에 따른 기부금단체(공익단체)가 운영하는 사업	▶일반기부금[공익법인등, 법인령\$39①(1)] ·종교 ·유치원, 학교 ·의료법인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기재부 지정·고시 단체 ▶ 일반기부금[공익단체, 소득령\$80①(5)] ·기재부 지정·고시 단체
10. 법인령\$39①(2)의 공익목적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공익목적기부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기재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46개 기부금
<해당없음>	▶사회복지시설 등 기부금품(법인령\$39①(4)) ▶국제기구(법인령\$39①(6))

2.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열거된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 포함)을 말합니다.

※ 법인령 \$39①(1) 각 목에 열거된 일반기부금단체(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이라 칭함)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소속단체 포함)
-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관할세무서장을 포함)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가. 공익법인등의 의무사항

공익법인등(종교단체는 제외)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의 공익법인등은 지정기간(④)의 경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 동안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법인령 §39 ①(1)가~라목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학교, 의료법인 등은 '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1)~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만 해당)
- ② 다음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 ㉠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비영리외국법인은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단서(공익법인등의 설립·정관 변경 허가 조건으로 주무부장관·기재부장관이 협의하여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 '21. 1. 1. 이후 지정분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
 - ㉡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시·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

- ③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 등

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법인칙 별지 제63호의7 서식)’에 따라 공개할 것

* 홈택스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시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㉞ VII. 부록-8번’ 참고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 '21. 2. 17. 이후 공개 또는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④ 해당 공익법인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⑤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또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내역이 있을 것*

*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이면서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이고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학교, 유치원) 등은 제외

㉞ ⑥, ⑦, ⑧ 의무사항은 '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나.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 및 점검

1)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법인령 §39 ⑥)

① (보고대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종교단체와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제외)

*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23.2.28. 이후 보고하는 분부터 의무이행 여부 보고대상에서 제외됨

② (보고기한)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장에게 위 ‘가. 공익법인등의 의무사항’의 이행여부(이하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여야 합니다(법인칙 §19의2①).

③ (보고서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 서식(법인칙 §19의2③)

- ④ (보고요구) 국세청장은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체없이 요구하여야 합니다(법인칙 §19의2②).

2) 국세청의 의무이행 여부 점검(법인령 §39 ⑦)

국세청장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해야 하며, 그 점검결과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않거나 그 공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지출 내역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출할 것을 해당 공익법인등에 요구할 수 있고, 공익법인등은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부금 지출 내역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공익법인등의 지정취소·명단공개(법인령 §39⑧·⑨·⑬, 국기법§85의5, 국기령§66⑩)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에 대한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공익법인등이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가) 지정취소(법인령 § 39⑧·⑨·⑬)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등이 위 ‘가.공익법인등의 의무사항’ 중 ①~⑤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익법인, 5) 지정취소」참고

나) 명단공개(국기법 § 85의5, 국기령 § 66⑩)

국세청장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익법인등(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학교, 의료법인 등)이 2회 이상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이행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단체의 명칭, 대표자, 의무불이행 내역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5.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참고

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익법인(법인령§39①(1)바목)

다음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의 요건(지정요건)을 모두 갖추고 국세청장(관할세무서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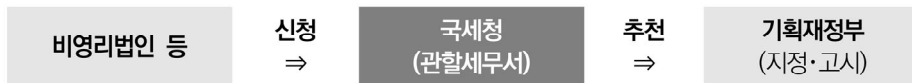
한편, 아래의 단체는 그동안 법령 등에 의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어 왔으나, 2021년부터는 지정추천 절차를 통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기부금단체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2018. 2. 13. 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보호단체
2. 2018. 2. 13. 전에 구 법인칙 별표6의2로 지정됐던 기부금단체
3. 2018. 1. 1. 전에 구 법인칙 별표6의7로 지정됐던 단체 중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단체

- * 2021년에 신청 시 1번은 신규신청, 2·3번은 재지정신청에 해당함
- * 1번·2번의 경우 '22.2.3까지 신청 후 기재부 지정·고시('22.3.31) 및 '23.10.20까지 신청 후 기재부 지정·고시('23.12.31)된 경우 2021년부터 기부금단체로 소급인정

1) 지정절차

- ① (추천신청)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세청장(관할 세무서장 포함)*에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21.1.1.이후 지정하는 경우부터 추천기관이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변경
- ② (신청방법) 추천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청 또는 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홈페이지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시 > 공익법인 지정 신청 > 공익법인 (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 신청
- ③ (지정추천) 국세청(관할세무서 포함)은 서류구비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지정추천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심사하여 매 분기말 지정·고시합니다.



분기별 신청기간

구 분	신청기간	추천기한	지정·고시
1분기	전년도 10/11~당해연도 1/ 10	2/10	3/31
2분기	당해연도 1/11~4/10	5/10	6/30
3분기	당해연도 4/11~7/ 10	8/10	9/30
4분기	당해연도 7/11~10/ 10	11/10	12/31

2) 지정요건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단서(공익법인의 설립·정관 변경 허가 조건으로 주무부장관·기재부장관이 협의하여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21. 1. 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나) 사회적협동조합 :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 (단서 요건) '21. 1. 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지정·고시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5) 법인령 §39⑫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조 ⑨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다만, 법인령 §39⑤ (1)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지정요건 미충족으로 비지정된 사례

구 분	지정요건	비지정 사유
정관	공익목적	• 정관상 공익활동이 아닌 회원의 권익보호, 복리증진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
		• 정관상 공익활동이 아닌 회원단체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
		• 정관상 공익활동이 아닌 회원을 대상으로 특정지역 등 견학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
		• 정관상 중견기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수행을 규정
		• 정관상 공익활동이 아닌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의 지도와 지원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

	해산시 잔여재산 의 귀속	• 정관상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거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
		• 정관상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한다고 규정
		• 정관상 잔여재산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고 규정
		• 정관상 잔여재산을 유사지원기관에 기증할 수 있다고 규정
		• 정관상 잔여재산을 비영리법인인 유사단체에 귀속한다고 규정
		• 정관상 잔여재산을 비영리재단에 귀속한다고 규정
	수혜자 특정	• 정관 목적과 사업의 수혜자가 회원으로 특정
		• 정관상 사업의 수혜자가 회원이나 회원의 자녀 중으로 특정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 정관상 홈페이지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규정이 없음
		• 정관상 기부금 모금액 및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규정
그 외		• 종교법인, 시·군·구체육회 등으로 지정 불필요
		• 공익법인의 대표자가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직전연도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
		• 주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법인의 실체 파악 필요
		• 해외의 법인 실재 확인 불가

3) 제출서류

- ① 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법인칙 별지 63-5 서식)
- ② 법인설립허가서
*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③ 정관 (위 '2) 지정요건'의 1)~3) 내용 반드시 포함)
- ④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결산서 대신 신청한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제출 가능)
- ⑤ 향후 3년(재지정신청의 경우 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⑥ 법인 대표자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법인칙 별지 63-6 서식)
- ⑦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 신규 신청시 : ①~⑥ / 재지정 신청시 : ①~⑤, ⑦
- ⑧ 선거운동 사실여부 확인서(임의서식이나, 선거운동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필요)

4) 지정기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함)*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 '21. 1. 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5) 지정취소(법인령 §39⑧·⑨·⑬)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제5항제3호,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사업연도별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가산세 포함*) 또는 증여세 (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
- * 가산세 포함은 '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나.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사실 또는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 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라. 법인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직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마. 해산한 경우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공익법인등에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 사유 및 법적근거 등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지정기간 중 위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정기간 종료 후 3년간 공익법인등에 대한 추천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 ☞ 공익법인등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익법인등으로 재지정 받을 수 없음

3. 소득세법상 공익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단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공익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소법 §34③(1), 소령§80①(5), 상증령§12(9)).

가. 공익단체 지정절차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익단체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익단체 추천서를 매반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직§44의2①).

1. 단체의 사업목적
2. 기부금의 용도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반기 종료일 1개월전까지 제출한 공익단체 추천서를 최종심사하여 매 반기말 지정·고시합니다.



반기별 신청기간

구분	추천기한	지정·고시
상반기	1/1 ~ 5/31	6/30
하반기	7/1 ~ 11/30	12/31

* 신청서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등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메인화면) 업무안내) 민간협력) 기부문화에서 '공익단체 추천'으로 검색)에서 별도 확인

나. 공익단체 지정요건(소득령§80①(5))

-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이 경우 다음의 수입은 그 비율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제외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 *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익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소득칙§44의2②)
 -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함(소득칙§44의2③)
-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 마.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 1)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 2)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3) 재지정의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했을 것
- 바.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공익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다. 공익단체 지정기간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개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며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2. 1. 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라. 공익단체 의무사항

- ① 공익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익단체가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공익단체에 해당 기한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지체없이 요구해야 합니다.
- ② 공익단체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익단체가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그 공익단체에 해당 기한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지체없이 요구해야 합니다.

마. 공익단체 지정취소

국세청장은 공익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 공익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제5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 나. 공익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 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하거나 실제 경영하는 사업이 해당요건과 다른 경우
- 마. 공익단체가 해산한 경우
- 바. 공익단체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익단체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사. 공익단체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3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 또는 수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익단체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이 취소된 단체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지정 취소 대상 공익단체의 명칭
2. 지정 취소 대상 공익단체의 주무관청
3. 지정 취소 요청 사유
4.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

...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보고 주요 상담사례

※ 주요 상담사례의 '기부금단체' 용어는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을 말함

Q.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은?

A.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학교, 의료법인 등 당연일반기부금단체(종교법인,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제외)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일반기부금단체 등입니다(법령§24③·법인령§38·§39①(1)가~바목).

〈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 〉

① 당연 일반기부금단체(법인령 §39①(1) 가~라목), (구)지정기부금단체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다. 유치원, 「초·중등·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②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일반기부금단체(법인령 §39①(1) 바목), (구)지정기부금단체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국제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Q.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방법은?

A. 기부금단체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12월말 법인의 경우 4월말)에 홈택스 또는 우편·방문의 방법으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법인령§39⑤, 법인칙§19의2①)

〈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방법 〉

- ① 홈택스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시 〉 출연재산 및 의무이행 보고 〉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기부금단체 제출)
- ② 우편·방문 :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

Q. 일반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사항은?

A. 일반기부금단체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령§39⑤)

- ① 다음의 내용이 정관에 포함될 것(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일반기부금단체에 한함)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불특정다수 대상)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
 - 홈페이지 개설하고, 기부금모금·활용실적 공개
- ②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 ③ 기부금 모금·활용실적을 홈페이지와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 ④ 선거운동한 사실이 없을 것(해당법인 및 그 대표자)
- ⑤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최근 2년동안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있을 것
- ⑥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 ⑦ 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것
- ⑧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것

Q.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의 지정취소 사유는?

A. 지정취소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법인령§39⑧).

- ①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사업연도별 1,000만원 이상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

〈 1천만원 이상 추징금액에 포함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

- ① (개정전)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등 14개 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항·제8항~제11항
- ② (21년 개정)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 등 3개 의무 추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제50조의2, 제50조의3

- ② 법인이 목적의 사업을 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하거나, 의무사항을 위반 또는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 하지 아니한 경우
- ③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④ 법인의 대표자 등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 ⑤ 법인이 해산한 경우

Q. 기부금단체가 지정취소되는 경우 불이익은?

A.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 손금산입 등을 배제하고, 기부금단체는 지정취소일로부터 3년간 기부금단체 지정을 제한받습니다(법인령§39⑨).

Q. 기부금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 기부금단체 지

정취소 사유 중 하나인 '1,000만원 이상 추징 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A. 기부금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으로 세금을 부과받기 전에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제1호에 따른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5, '22.9.14.).

Q. 기부금단체 지정 또는 지정취소 결과 확인방법은?

- A. 기부금단체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 결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고시·공고·지침' (공익법인으로 검색)

Q.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미제출 또는 의무불이행시 불이익은?

- A. ① 사회복지법인, 학교, 의료법인 등 당연일반기부금단체가 2회 이상 의무불이행 또는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미제출한 경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을 공개하고(국기령866⑩(4))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일반기부금단체는 기부금단체로서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법인령839⑧·⑨)

Q. 학교법인이 산하의 모든 학교를 일괄보고할 수 있는지?

- A.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익법인등(학교)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6항에 따른 동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학교가 개별적으로 보고하거나 학교법인이 일괄보고할 수 있습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0, '22.7.22.).

Q. 지정기간 만료일이 2023.12.31.인 경우 지정기간이 경과한 2024년에도 의무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A. 지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지정기간 동안의 의무이행여부에 대한 보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법인령839⑤)

...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보고 주요 상담사례

Q. 신청기간과 방법은?

- A. • (신청기간) 기부금단체 지정추천을 받고자 하는 사단·재단 법인 등은 1월·4월·7월·10월의 10일까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면 국세청장(관할세무서장)의 추천을 받아 매분기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고시되고, 지정·고시된 경우 지정연도 1월1일부터 소급하여 기부금단체로 인정됩니다.
• (신청방법) 지정추천 신청은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청 또는 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시 > 공익법인 지정 신청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 신청

Q. 지정추천 신청 구비서류는?

A. <지정추천 신청시 구비서류> (법인칙§18의3②)

- ① 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 서식)
- ② 법인설립허가서*
 -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비영리외국법인]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설립 증명 서류
- ③ 정관
- ④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예산서(설립 후 3년 미만인 법인은 제출가능한 사업연도 결산서, 추천 신청한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해당사업연도 예산서를 제출)
 - * ['24년 결산종결 후] '22~'24년 결산서 제출 ['24년 결산종결 전] '21~'23년 결산서 제출
- ⑤ 향후 3년(재지정신청의 경우 5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⑥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6 서식)
- ⑦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 ※ 신규 신청 ①~⑥ / 재지정 신청 ①~⑤, ⑦
- ⑧ 선거운동사실여부확인서(임의서식이나, 선거운동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필요)
 - ▶ 구비서류를 서식에 맞게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식이 맞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 주요기재 사항이 누락 및 착오기재 된 경우 등은 추천할 수 없음

Q. 법인설립허가서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A. 설립허가서는 지정추천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므로 분실·훼손 등으로 설립허가서가 없는 경우 재발급을 받아 제출하거나,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받은 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예 : 구 법인칙 별표 6-2) 중 당초부터 설립허가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법인칙§18의3②)

Q.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 명단을 조회할 수 있나요?

- A. 홈택스 기부금단체조회에서 조회가능하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공익법인 포털 바로가기 > 공시/공개 열람 > 기부금단체 간편조회(기획재정부장관 지정)

Q. 재지정 신청시 공익활동보고서는 몇 년분을 작성하는지?

- A. 재지정 신청시 제출하는 공익활동보고서는 종전 지정기간 동안의 공익활동사항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법인칙§18의3②).

Q. 사업계획서, 공익활동보고서는 법정 표준서식이 있는지?

- A. 사업계획서, 공익활동보고서는 법정 표준서식이 없으므로 자유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는 것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참고 가능한 견본 양식(예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법규칙 §18의3②).

*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공익법인 >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Q.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지정추천이 가능한지?

A. 법인등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추천이 가능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지정추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공익법인 지정추천’ 대상이 아니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공익단체 지정추천’ 절차를 통해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단체 지정추천〉

① 신청대상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② 지정절차 : 비영리민간단체(신청) → 행정안전부(추천) → 기획재정부(지정)

☞ ‘공익단체 지정추천’ 신청 시 반드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교부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Q. 기부금단체가 되려면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나요?

A. 기부금단체는 ❶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단체 등 법령에 열거되어 별도의 지정 절차가 필요 없는 단체와 ❷ 국세청장의 추천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있습니다(법법§24②, 법인령 §39①).

※ 법령에 열거되어 지정절차가 필요없는 경우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특례기부금 (구 ‘법정기부금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가~마 (구 ‘당연지정기부금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 등)

Q. 법인설립 후 1년 미만의 비영리법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제출서류 중 최근 3년간의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는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및 당해연도 예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가 없는 경우 추천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수입·지출내역서로 제출 가능합니다(법인칙§18의3).

4.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 의무 등(법법 §112의2, 소법 §16의3)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법인칙 제75의2 서식)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국세청장 등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기부금단체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법인칙 제75의3 서식)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공익법인 포털 바로가기 > 기부금단체 추천/보고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Ⅶ. 부록-11번’ 참고

* ‘21. 7. 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5.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국기법 §85의5,국기령§66⑩)

1) 개요

국세청장은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단체명, 대표자, 국세추징 명세, 거짓 영수증 발급건수, 의무불이행 내역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2) 공개 대상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1.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불복청구기간은 제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간(불복청구기간은 제외)의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불복청구기간은 제외)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거짓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4.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각 호(제1호는 제외)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후단에 따른 국세청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

※ 소득세법상 공익단체는 위 1~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명단공개 대상이 됩니다.

3) 공개 절차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
- ② 통지일부터 6개월 동안 소명기회 부여
- ③ 해당 단체들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 의무 이행 등을 고려하여 국세정보위원회에서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
- ④ 공개대상자 최종 선정

4) 공개 방법

명단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5)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을 게시한 날부터 3년간 공개합니다(국기령 §66).

* '23.2.28. 전 명단공개 대상자에도 적용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국가 등의 기부금영수증 작성·교부

■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기부금을 모집하는 법인의 기부금 영수증 작성 방법

법인이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기부금을 모집하는 (사)○○동문화발전위원회에 기부하고 모집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규정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부금영수증(별지 제63호의 3 서식)에 기부처는 서울시로 기부금 모집처는 (사)○○동문화발전위원회로 기재하여 법인에게 교부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6, '05.9.23.)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시 기부금품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발급자 명의를 기관장의 명의로 된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한도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때 기부금품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발급자 명의를 기관장의 명의로 된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7, '05. 2. 11.)

❖ 기부금 해당 여부

■ 지방자치단체에게 토지 무상 임대시 기부금 및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법인세과-481, '14.11.19.)

■ 기부금 단체에 용역제공 후 대가의 일부를 기부하면서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 단체(이하 “해당단체”)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해당단체에 기부하고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정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서면법규과-1362, '12.11.20.)

■ 내국법인이 아동복지 전문기관에 컨설팅이나 공연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외 아동을 돕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350, '11.10.13.)

■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경우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당해 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지정기부금 단체는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법인세과-1082, '10.11.22.)

- 기본통칙 24-35...1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 임대시 기부금 의제】 법인이 영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해당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의 기부금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의 경우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 등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고, 신탁재산의 운용이익을 기부자(위탁자)가 인출하는 경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에 신탁한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77, '23.8.31.)

❖ 기부금영수증의 작성

■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발급일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임(법인인세과-3230, '18.1.19.)

■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법인세과-3709, '21.7.16.)

❖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인 종교단체가 연합회의 소속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제1호마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연합회의 소속단체가 아닌 회원교단과 회원단체는 동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해당 회원교단과 회원단체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회원교단·회원단체와 그에 소속된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법규과-180, '12.2.22.)

❖ 추징의 개념

■ 공익법인이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를 자진납부한 것이 지정취소 사유인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기 전에 가산세를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제1호에 따른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

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법인세제과-375, '22.9.14.)

❖ 의무이행 보고

-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이 산하의 모든 학교를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법인등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동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익법인등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를 불이행한 공익법인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함(법규과-2194, '22.7.25.)

-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공익법인 의무이행 요건 충족 여부

장학재단이 출연법인과 기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사업 일부의 수혜자를 출연법인의 근로자로 한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의무이행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공익중소법인지원팀-411, '22.4.22.)

6. 주무관청과 국세청간 협조

주무관청에서 인·허가한 비영리법인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설립허가 사실 등을 공익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이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한 때에는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가. 설립허가 등 통보(상증법 §48⑦, 상증령 §41③)

주무관청은 다음과 같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통보사항)

㉞ 세법상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사실

- *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익법인·공익단체로 지정한 비영리법인

☞ 설립허가 시점에는 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익법인·공익 단체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해당함

- * (통보서식) 공익법인설립허가 등 통보서(상증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㉟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

② (통보기한) 설립허가 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나. 증여세 등 부과내용 통보(상증법 §48⑥, 상증령 §41②)

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이 공익법인 등의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통보사항) 공익법인 등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 내용

- * (통보서식) 공익법인 과세내용 통보서(상증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② (통보기한) 부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다. 한국학교·전문모금기관의 의무위반사항 등 통보(법인령 §38 ⑩·⑫)

- ① 주무관청은 법인령 §38③·④에 따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요건충족여부등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한국학교등이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를 국세청(관할세무서 포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주무관청은 공익목적 위반, 설립허가 조건 위반,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해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한국학교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등의 명칭과 그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익법인등의 지정·취소사실, 공익목적 위반사실 등에 대한 통보(법인령 §39 ⑬, 소득령 §80 ⑧)

- ① (국세청→주무관청) 국세청(관할세무서 포함)은 법인령 §39①(1) 바목에 따른 법인 또는 소득령 §80①(5)에 따른 단체가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 (적용시기) 법인령 §39①(1) 바목에 따른 법인은 '21년 이후, 소득령 §80①(5))에 따른 단체는 '25년 이후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 또는 지정취소된 분부터 적용
- ② (주무관청→국세청) 주무관청은 법인령 §39①(1) 바목에 따른 법인 또는 소득령 §80①(5)에 따른 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법인령 §39⑧ 및 소득령 §80②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관할세무서 포함)에 통지해야 합니다.
 - * (적용시기) 법인령 §39①(1) 바목의 공익법인은 '21년 이후, 소득령 §80①(5))에 따른 공익단체는 '25년 이후 법인령 §39⑧ 및 소득령 §80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세영세율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통 화 명	10월 1일(수)	10월 2일(목)	10월 10일(금)	10월 13일(월)
미 달 러 (USD)	1403.20	1406.00	1401.90	1420.50
위 안 화 (CNH)	196.73	197.49	196.59	199.24
일 본 엔 (JPY)	949.26	956.43	915.08	935.49
유 로 화 (EUR)	1647.71	1650.08	1620.60	1649.20
영 국 파 운 드 (GBP)	1887.30	1895.50	1863.90	1896.08
캐 나 다 달 러 (CAD)	1008.12	1008.86	999.64	1014.93
홍 콩 달 러 (HKD)	180.30	180.69	180.15	182.53

통 화 명	10월 14일(화)	10월 15일(수)	10월 16일(목)	10월 17일(금)
미 달 러 (USD)	1427.70	1428.40	1424.40	1419.10
위 안 화 (CNH)	200.16	199.87	199.57	199.06
일 본 엔 (JPY)	937.00	940.88	943.59	944.68
유 로 화 (EUR)	1651.14	1657.52	1658.93	1659.92
영 국 파 운 드 (GBP)	1902.91	1902.63	1908.98	1907.48
캐 나 다 달 러 (CAD)	1016.95	1017.31	1014.10	1010.25
홍 콩 달 러 (HKD)	183.52	183.74	183.20	182.62

통 화 명	10월 20일(월)	10월 21일(화)	10월 22일(수)	10월 23일(목)
미 달 러 (USD)	1419.50	1420.20	1423.70	1430.10
위 안 화 (CNH)	199.31	199.47	199.91	200.69
일 본 엔 (JPY)	940.66	941.90	937.20	941.20
유 로 화 (EUR)	1654.57	1653.61	1651.56	1660.49
영 국 파 운 드 (GBP)	1905.68	1903.64	1903.42	1910.11
캐 나 다 달 러 (CAD)	1013.02	1012.08	1015.48	1022.27
홍 콩 달 러 (HKD)	182.75	182.81	183.19	184.02

통 화 명	10월 24일(금)	10월 27일(월)	10월 28일(화)	10월 29일(수)	10월 30일(목)
미 달 러 (USD)	1436.60	1437.10	1432.50	1434.30	1433.00
위 안 화 (CNH)	201.30	201.38	201.33	202.22	201.97
일 본 엔 (JPY)	941.23	937.77	937.75	942.84	938.38
유 로 화 (EUR)	1668.83	1669.83	1668.93	1671.03	1662.71
영 국 파 운 드 (GBP)	1914.41	1913.10	1910.88	1903.46	1890.63
캐 나 다 달 러 (CAD)	1027.06	1026.45	1024.31	1028.47	1027.61
홍 콩 달 러 (HKD)	184.85	184.84	184.41	184.62	184.41

※ 상기의 기준·재정환율은 금융결제원의 자회사인 (주)서울외국환증개에서 고시한 내용으로 외화외상매출의 회계반영, 결산평가와 부가세영세율 과세표준계산시 적용됩니다.

※ (주)서울외국환증개 홈페이지(<http://www.smbs.biz>, 전화 : 3705-5500)에서 당일의 기준환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